


의정활동보고서



제255회 정례회(2012. 6. 11 ~ 6.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첫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채옥주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도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발한 제9대 도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해보면 국책사업 유치, 한·미 FTA, 구제역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의회는 25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640건의 도정현안을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그 어느

의회보다 많은 일을 한 알찬 의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생존권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 결의문 23건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혼을 보이는 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연구 활동을 통해서 52건의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의회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합심 단결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며,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같이 생산적인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9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5분 자유발언			44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			44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울진)			48
□ 황이주 의원(기획경제위원회/울진)			51

부 록

☐ 조례안(15건)	57
☐ 예산안(2건)	122
☐ 결산안(2건)	19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5회 정례회는 2012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26일까지 16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18회의 상임위원회, 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6월 11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끝이어 시작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한혜련 의원(영천)이 “FTA 대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농수산물식품연구원 설립제안과 경북북부발전과 동남권 동반성장 관련, 양성평등문제 및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추진”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 이정호 의원(포항)은 “물산업 및 물관리 대책, 연구용역 심의현황 및 대책, 지방도 929호선 확장관련, 포항 오천지역 공립고등학교 신설관련” 등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하였다.

6월 12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부

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간 경전철 연장 건설, 대구~무주간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김진선 철도(김천~성주~고령~진주) 조기건설, 기간제 교사의 과다한 학급담임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학교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성주)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안동)이 “경북의 정체성,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도청정문 구호(취직좀 하자),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교 통합제안,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심리상담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최우섭 의원(교육 2)이 “정부의 소규모학교 폐교추진에 따른 대책방안, 경상북도교육청소관 유허재산 관리실태 활용방안,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학교시설 재배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6월 26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창숙 의원의 “경북대 학사조직 개편안”과 전찬걸 의원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따른 지자체간 영토수호 공동대응”, 황이주 의원의 “의정활동 3년을 시작하면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트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의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 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2

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이밖에도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시설을 비교견학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울산의 주요시책 추진 사업장인 태화강, 혁신도시, 울산 고속철역사 등을 방문하였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조례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시행상의 문제점 및 예산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6월 11일 ~ 6월 26일(16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46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23	1	3	3	3	2	3	3	4	1
누 계	266	21	35	36	29	25	33	28	33	26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1(월) 14:00 (제1차)	☐ 개회식 ☐ 안전처리 ○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한해련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정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6. 12(화) 11: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기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최우섭 의원(교육위원회)	
6. 26(화)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문화환경위원회 김창숙 의원(비례) ○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의원(울진) ○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울진) ☐ 안전처리 및 폐회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6(화) 11:00 (제3차)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 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선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2(화) 15:40 (제1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제2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2(수) 15:30 (제1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미래전략기획단)	
6. 13(수) 10:30 (제2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일자리경제본부, 공보관실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공보관실)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투자유치본부)	
6. 14(목)~ 6. 15(금)	☐ 현지확인 ○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6. 18(월) 10:30 (제3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트 육성을 위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1(월) 16:30 (제1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2(화) 16:00 (제2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행정지원국	
6. 13(수) 10:00 (제3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포함),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우선 고용과 체불 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14(목)~ 6. 16(토)	☐ 현지확인 ○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2(화) 16:00 (제1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수)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 체육국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14(목) 10:30 (제3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6. 14(목)~ 6. 15(금)	☐ 현지확인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4(목) 10:30 (제1차)	☐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6. 15(금) 14: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 간담회 실시 ○ 발작물 직불제 간담회	
6. 26(화)~ 6. 28(목)	☐ 현지확인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본부	
6. 14(목) 10: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6. 18(월) 11:00 (제3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 현안사항보고 ○ 도청이전추진현황	
6. 22(금)~ 6. 23(토)	☐ 주요시책 추진 사업장 방문(울산) ○ 태화강, 혁신도시, 울산 고속철역사 등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2(화) 16:1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수)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회계 결산보고의 건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6. 14(목)~ 6. 16(토)	☐ 현지방문 ○ 2012 여수세계박람회	
6. 18(월) 11:00 (제3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9(월) 10:30 (제10차)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공보관실, 감사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여성정책관, 환경특별관리단, 기획조정실, 환경해양산업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0(수) 10:30 (제11차)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교육청 소관	
6. 21(목) 10:30 (제12차)	☐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감사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지유치본부, 공무원교육원, 경북 도립대학, 여성정책관,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 림국,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의회 사무처,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6.22(금) 10:30 (제13차)	☐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교육청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및 계수조정소 위원회 활동 ☐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5(월) 15:00 (제7차)	☐ 주요 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단 업무보고 (도청신청사건립 사무실)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2 (281)	22(1) (276)	12 (212)	10(1) (61)	(3)		(3)	(2)	
조 례 안	소 계	14 (165)	14(1) (160)	6 (112)	8(1) (45)	(3)		(3)	(2)	
	의 회 제 안	7 (59)	7(1) (56)	4 (41)	3(1) (15)			(2)	(1)	
	도지사 제 출	3 (74)	3 (72)	1 (50)	2 (21)	(1)		(1)	(1)	
	교육감 제 출	4 (32)	4 (32)	1 (21)	3 (9)	(2)				
	규 칙 안	(2)	(2)	(2)						
예산·결산		4 (17)	4 (17)	2 (6)	2 (11)					
동의·승인		1 (24)	1 (24)	1 (21)	(3)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23)	(23)	(21)	(2)					
기 타 안		3 (47)	3 (47)	3 (47)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2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63)	(8)	1 (12)	(10)	2 (20)	1 (1)	(4)	(3)	(1)	(4)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1		1							
농수산										
건 설 소 방	2				2					
교 육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4 (63)	4 (63)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건설소방	2	2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8건(추경예산 2, 결산 2, 조례 14)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12. 6.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상임위 (제 교육) (2012. 6. 4)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황이주 의원 등 14명 (2012. 6. 1)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2. 6. 4)
경상북도지사 (2012. 6. 1)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2. 6. 4)
추재천 의원 등 18명 (2012. 6. 1)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2. 6. 1)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화환경 (2012. 6. 4)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이시하 의원 등 32명 (2012. 6. 1)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박권현 의원 등 26명 (2012. 5. 2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 (2012. 6. 4)
곽광섭 의원 등 30명 (2012. 5. 29)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건설소방 (2012. 6. 4)
경상북도교육감 (2012. 6.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 (2012. 6. 4)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2. 6. 1)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교육 (2012. 6. 4)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김영기 의원 등 39명 (2012. 5. 29)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서정숙·박태환 의원 등 28명 (2012. 5. 29)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20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5. 11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2. 5. 24 (제3328호)
"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329호)
"	"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30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31호)
"	"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32호)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	" (제3333호)
"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2. 5. 31 (제3334호)
"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3335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36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5. 11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012. 5. 31 (제3337호)
"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3338호)
"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3339호)
"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3340호)
"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41호)
"	"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 (제3342호)
"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3343호)
"	"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 (제3344호)
"	"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3345호)
"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3346호)
"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3347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	5. 1 ~ 5. 3	제주도	• 우수 농수산업 현장 비교시찰 ※ 참석 : 이상용 위원장의 농수산 위원
	5. 9	의성군	• 우박피해농가 및 영농수리시설 현장 점검 ※ 참석 : 이상용 위원장의 농수산 위원
독도수호 특 별 위 원 회	5. 16 ~ 5. 18	울릉도 독 도	• 독도 현지근무자 위문 격려 • 독도경비대 초병근무 체험 등 ※ 참석 : 전찬걸 위원장의 독도특위 위원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6. 4 ~ 6. 5	영 주 봉 화	• 추경 및 결산심사대비 도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참석 : 의장, 김종천 위원장의 예결 위원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문경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13(일)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이경임 · 이시하 의원
-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원 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4(월) 10:30
 - 장 소 : 청도군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하수 의원

-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14(월) 15: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참 석 : 김명호 · 이경임 · 이영식 의원
- 평양민속예술단 초청 시민화합 한마당행사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5. 14(월) 18:30
 - 장 소 : 경산시민문화회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 윤성규 · 서정숙 의원
-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도민 3만명 서명완료 기자회견 참석
 - 일 시 : 2012. 5. 15(화)
 - 장 소 : 도청 정문
 - 참 석 : 김창숙 의원
-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15(화) 10:00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5. 15(화) 10:30
 - 장 소 : 도 교육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5. 16(수) 08:40
 - 장 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성주 참외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6(수) 9:00
 - 장 소 : 성주 테니스장 외 7개소
 - 참 석 : 정영길 의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창립 5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5. 16(수) 10:00
 - 장 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다목적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범도민 「가정회복운동」 실천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6(수) 10:30
 - 장 소 : 영주시민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영기 위원장, 박성만·김종천 의원
-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5. 16(수) 11:00
 - 장 소 :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참 석 : 홍진규 의원

-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2. 5. 17(목)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보훈단체 제6회 독도지킴이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17(목) 13:0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장세현 위원장, 김희수·이정호·장두욱 의원
- 경북지역산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연계강화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5. 17(목) 14:3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병훈 의원
- 2012 성주 생명문화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5. 17(목) 19:00
 - 장 소 : 성주 성박숲
 - 참 석 : 박기진·정영길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1: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청도 반시 가공 산업 활성화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3:00
 - 장 소 : 청도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박권현 의원
- 경상북도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4:00
 - 장 소 : 의성 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나현아·이왕식 의원
-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장두욱 의원
- 경북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경기용품 전달식 및 친선경기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4:00
 - 장 소 : 위덕대학교
 - 참 석 : 최학철 의원
- 바다 식목일 제정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5:00
 - 장 소 : 울진 후포항
 - 참 석 : 황이주 의원

- 2012 제5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8(금) 18:00
 - 장 소 : 울진 후포항
 - 참 석 : 황이주 의원
- 2012 구미시 교직원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9(토) 10:00
 - 장 소 : 구미전자공고
 - 참 석 : 심정규 의원
- 경상북도 아름다운 간판달기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9(토) 11:00
 - 장 소 : 포항시 동해면 약전리 체육운동장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이정호·장두욱 의원
- 제17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5. 19(토) 11:00
 - 장 소 : 상주시민운동장
 - 참 석 : 강영석 의원
- 2012 천하제일 전국 어린이 택견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19(토) 13:00
 - 장 소 : 성주 성밖숲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 작헌례 참석**
 - 일 시 : 2012. 5. 20(일) 13:20
 - 장 소 : 성주군 성박숲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박기진·정영길 의원
- **2012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2. 5. 21(월) 10:3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김원석·박태환·이달·최우섭 의원
- **제6회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20(일) 10:30
 - 장 소 : 영천생활체육공원
 - 참 석 : 한혜련 의원
- **제7회 경상북도 배드민턴 연합회 여성부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20(일) 11:00
 - 장 소 : 성주 실내 체육관
 - 참 석 : 정영길 의원
- **과학벨트 연구단 최대선정에 따른 기자회견 참석**
 - 일 시 : 2012. 5. 21(월) 11:00
 - 장 소 : 도청 프레스센터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5. 21(월) 17:30
 - 장 소 : 경주향교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최학철 의원
- 무인헬기 농약살포 시연회 참석
 - 일 시 : 2012. 5. 22(화)
 - 장 소 : 고령 개진면 소재 감자밭
 - 참 석 : 광광섭 의원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5. 22(화)
 - 장 소 : 현대호텔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박병훈·박태환·심정규·이달 의원
- 초등학교 도의회 견학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22(화) 10:00
 - 장 소 : 경북도의회
 - 참 석 : 박권현·한창화 의원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경상북도교육감 주최) 참석
 - 일 시 : 2012. 5. 23(수) 12: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심정규 의원, 박태환 의원

- 포항 동빈 내항 운하건설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5. 22(화) 14:00
 - 장 소 : 포항 동빈 내항
 - 참 석 : 김희수 · 한창화 의원
- 감사나눔 범시민운동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2. 5. 23(수) 15: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채옥주 의원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1:00
 - 장 소 : 구미시 새마을회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구자근 의원
- 경북정체성 포럼 총회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1:0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국도 4호선 대구 통로 확장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1:00
 - 장 소 : 김천 국도 4호선 일원
 - 참 석 : 나기보 의원

- 2012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1:30
 - 장 소 : 영주국민체육센터
 - 참 석 : 김종천 · 박성만 의원
- 예천 양수 발전소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1:30
 - 장 소 : 예천 양수 준공탑 광장
 - 참 석 : 정상진 의원
- PCT(파워카본테크놀로지)社 음극 재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5. 24(목) 14:00
 - 장 소 : 구미4공단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충의공 정기룡 장군 탄생 450주년 탄신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2. 5. 26(토)
 - 장 소 : 상주시 충의사
 - 참 석 : 강영석, 한재석 의원
-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28(월) 11:00
 - 장 소 : 경주 불국사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4회 경상북도 도자기 문화축전 참석
 - 일 시 : 2012. 5. 29(화)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14회 경상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29(화) 9:30
 - 장 소 : 독도
 - 참 석 : 김기홍·이용진 의원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5. 29(화) 11:30
 - 장 소 : 포항 UA 컨벤션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채옥주 의원
- 경북 서부지역 학습클리닉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2. 5. 29(화) 15:00
 - 장 소 : 구미 신기초등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금호강 음악분수 통수식 및 푸른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2. 5. 30(수)
 - 장 소 : 영천시청 앞 금호강 둔치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제4회 고등학생 ENGLISH SPEECH CONTEST 참석
 - 일 시 : 2012. 5. 30(수) 10:00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2012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30(수) 11: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병훈 의원
- 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 일 시 : 2012. 5. 30(수) 12:00
 - 장 소 : 대구 안압정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2 나눔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5. 30(수) 14:3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4회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31(목) 10:30
 - 장 소 : 울진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성만 · 박진현 의원

- 제17회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5. 31(목) 14:00
 - 장 소 : 영덕 어촌체험마을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기홍 · 박진현 의원
-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참석
 - 일 시 : 2012. 5. 31(목) 14:00
 - 장 소 : 영주시민회관
 - 참 석 : 김종천 의원
- 2012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가정가꾸기 실천대회 참석
 - 일 시 : 2012. 5. 31(목) 15: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원석 · 김희수 · 박병훈 · 장두욱 ·
채옥주 · 한창화 · 한혜련 의원
- 제2회 의병의날 참석
 - 일 시 : 2012. 6. 1(금) 11:00
 - 장 소 : 항일 의병 기념공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 경북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0:0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 참 석 : 김수용 · 한혜련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0:00
 - 장 소 : 예천군민운동장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도기욱·정상진·홍광중 의원
- 2012 경상북도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0:0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 참 석 : 한혜련 의원
- 제23차 경북지구JC특우회 등반대회 및 독도사수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0:00
 - 장 소 : 백암온천
 - 참 석 : 전찬걸·황이주 의원
- 제13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1:00
 - 장 소 : 영남대학교 정구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서애 류성룡 선생 사제사 봉행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1:00
 - 장 소 : 안동 하회마을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임진란 7주갑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6. 2(토) 15: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김명호 · 이영식 의원
- 경산시 청년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3(일) 10:00
 - 장 소 : 경산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 서정숙 · 윤성규 의원
- 제8회 생활체육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3(일) 10:00
 - 장 소 : 구미 지산체육공원
 - 참 석 : 구자근 의원
-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안보의식 강화 결의 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6. 3(일) 16:3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장세현 위원장, 김말분 · 이정호 · 장두욱 의원
- 초등학생 도의회 견학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6. 5(화) 11:00
 - 장 소 : 경북도의회
 - 참 석 : 장세현 위원장, 나현아 · 한혜련 의원

- 제17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6. 5(화) 14:00
 - 장 소 : 칠곡보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제57회 현충일 추념식(봉화) 참석
 - 일 시 : 2012. 6. 6(수) 9:50
 - 장 소 : 봉화군 충혼탑
 - 참 석 : 권영만 위원장
-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2. 6. 6(수) 09:55
 - 장 소 : 구미시 충혼탑
 - 참 석 : 이상호 의장, 윤창욱 위원장, 구자근·김봉교·변우정·심정규·이태식·장영석 의원
-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6. 7(목) 11: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호 의장, 장경식 위원장
- 제6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연찬회 참석
 - 일 시 : 2012. 6. 7(목) ~ 6. 9(토)
 - 장 소 : 제주도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일연선사 다례재 참석

- 일 시 : 2012. 6. 9(토) 15:00
- 장 소 : 경산시립박물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세호·김창숙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6월 26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창숙 의원(비례) ◎

<<경북대학교 학사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경북대학교가 학사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글로벌인재학부 통폐합을 밀실에서 추진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명실상부한 경북 내 최고수준의 학부인 현 글로벌인재학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방화, 나아가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식과 인적자원 제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지방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크고 작은 공헌을 해왔으며, 이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대학진학의 추세가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되어 가고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홀대하면서 사람과 물자가 떠나가는 수도권 집중의 현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인재 유출이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반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전, 경북대학교는 이런 여론에 부응하여 지역과 국가를 이끌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최고의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범시켰습니다. 수능 성적 평균 1.3등급의 성적 최우수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의 학비, 기숙사비, 노트북, 해외연수비 등 전액을 지원하는 등 야심 찬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과 혜택 때문에 수도권의 우수한 대학진학을 꿈꾸던 지역의 많은 최우수인재들이 경북대학교를 믿고 글로벌인재학부에 들어와서 글로벌 인재양성의 목표실현에 동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은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앞 다투어 글로벌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 회의에서의 의제도 글로벌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

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하게 되어 재정압박이 심해져 학사 운영이 전반에 걸쳐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신설된 글로벌인재학부로 돌아가서 너무나 안이하고 부도덕한 발상으로 통폐합의 추진을 공언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이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포기하는 처사는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글로벌인재학부를 폐지하는 것은, 첫째는 경북대가 지역사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학교로 낙인찍히는 것은 경북대의 손실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손실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학생들을 속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어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교육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대비 효과분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적 손실, 사회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그 속성상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논리로 지역인재들이 군집해 있는 글로벌인재학부를 폐지하는 것은 글로벌 미래의 꿈을 안고 학업에만 몰두해온 120여 명의 학생들과 이를 지켜본 3백만 도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여론이 경북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북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북대를 불신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수인재들의 역외유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립 경북대에 정부는 물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협력하여 지원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래 우리 경북은 학문과 인재의 고장이라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인재교육에서 이 지역의 명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여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지역인재는 물론 경제력과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와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심기일전하여 글로벌인재학부를 비롯한 지역인재 교육에 더 매진하고 지역사회 내부에 대학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호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경북을 사랑하는 3백만 도민과 함께 경북대학교는 물론 지역대학교가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최전선에서 지역의 학문창달과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찬걸 의원(울진)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따른 지자체간 영토수호 공동대응관련>>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년간 독도특별위원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 때문에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던 우리 땅 대마도를 찾는 것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점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영토수호를 위한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형학적으로 볼 때 대마도는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km이나 일본 본토에서는 147.5km나 됩니다. 여기 좌우에 설치해 놓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보다 세 배나 가까운 곳에 있는 대마도 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 일본에서 어떻게 자국의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보더라도 대마도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의 관직과 직명을 조선의 왕으로부터 받고 지명의 상당수가 아직도 조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지의 '위지 왜인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증보문헌비고', 일본의 한자에 일본음을 달아 제작한 '조선부', 일본의 사서인 '진대', 일본 등정방이 저술한

대마도 역사서 ‘대주편년략’ 등에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의 한국 관련 주요 유적이나 행사로는 조선통신사 행렬도, 아리랑 마쓰리, 바이린지, 가나다 성터, 신라사신 순국비, 코즈나의 고려불상, 대마도주의 서신집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 문헌 등의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862년 서구열강들이 대마도를 놓고 서로 각축하자 일본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이므로 서로 다투지 말 것을 제안하면서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서구 열강들에게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일본 스스로 대마도가 조선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1948년과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대마도 반환요구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1950년 1월, 한국정부에 대마도 양국 공동관리 제안까지 갔다가 6개월 후 6·25전쟁 발발로 무산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자국영토로 편입시키게 된 시점은 1868년도 로써 143년이 되었고, 완전 편입한 것은 60여년에 불과합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대국이 약소국 영토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토반환 사례를 보면, 1968년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오가사와라섬, 1933년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반환한 그린란드 등이 주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의 정체성은 선비, 화랑, 새마을정신과 호국정신이라고 하겠

습니다. 국난극복의 중심에 경북이 있었기에 영토수호의 중심에 경북이 있어야 합니다. 조상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지키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기 전에 국민은 우리 땅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떳떳하게 요구하고 맞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에 설치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영토수호 및 회복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토분쟁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되 영토수호 및 회복을 위한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마도 문제와 병행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독도관련 자료들이 안용복기념관에 보관된 것처럼 대마도에 관한 역사, 문화 유적 및 유물, 지리 등 데이터 베이스를 지금부터 구축하고 경남, 제주도와 함께 영토수호 및 회복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수호 및 회복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독도와 병행하여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틈만 나면 독도문제를 끄집어내어 전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을 종결시키는 길은 대마도가 한국의 오랜 영토란 사실을 알리고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이주 의원(울진) ◎

<<의정활동 3년을 시작하며>>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끝내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에 입성을 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이켜보자면 지난 2년의 세월이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무성의한 행정을 접할 때마다 초선인 제 가슴은 미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선 이유는 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텍 울진해양대학원 건립의 일방적인 취소 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포스텍의 그 명성과 그 위상을 놓고 보자면 참으로 저급한 행위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포스텍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와 울진군·포스텍이 공동으로 환동해안 시대 해양사업을 우리 경북이 주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름대로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이 포스텍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포스텍의 명성에만 너무 우리가 의존하고 부실계획에 동조해 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고 포스텍 총장이 바뀌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이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불협화음이 나올 때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책으로 향후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포스텍
연계사업은 무조건 중단을 하자, 불이익을 주자라는 주장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주장이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포항공대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포항공대가 명사십리를 자랑하고 청정해역을 자랑
하는 울진의 한 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매입과정을 보면 한 편의 사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스텍은 2001년도 당시 이 땅이 워낙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과 많은 유수의 학교들이 이 땅 매입에 나섰지만
우리 주민들은 포스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포스텍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준 이유가 포스텍이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농산물과 수산
물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짓겠다, 문화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했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손을 들어주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소의 '연'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숙소

로만 쓰고요, 관리인 역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지역에 방출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어부들이 거친 파도와 생명을 담보로 싸우면서 힘들게 번 돈을 한 평 두 평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교육청에 후학 육성을 위해 희사했던 그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했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포스텍, 우리가 계속 산학협력의 동반자로 함께 가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포스텍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초 약속대로 이 땅에 연구소를 설립하라, 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이 땅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장에 우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 주기를,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가 함께 동참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인생살이 많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올리면서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5건(원안가결 6, 수정가결 9)
- 예산안 : 2건(수정가결)
- 결산안 : 2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 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3.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4.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한 국책사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안전관리,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6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 7 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정책) ①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 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 교육·훈련
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 6 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상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제 7 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의거 도지사는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①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의거,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예방사업 단체 지원 등) ①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 경기 투표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2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레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적용시한) 제14조의2(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는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u>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 경기 투표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2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u>제 1 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레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u>제 2 조(적용시한)</u> 제14조의2(전통 소싸움 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는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경상북도(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경상북도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경상북도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

비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등을 말한다.

4.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 4 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도지사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도지사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장 체불임금 등 방지

제 6 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제3호에 따른 임금 청구서 청구서와 청구 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3호에 따른 임금 합의서, 제4호에 따른 임금 청구서와 청구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 제5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의 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7 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

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9 조(임금의 직접지급) ①도지사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지사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하도급 업체 보호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도지사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표준 하도급계약서 권장) 도지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2조(대가지급의 확인) ①수급인은 도지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신고센터 설치) ①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조관계 구축) 도지사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제출)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법규의 준수) 도지사는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1항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 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 금액)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영 제12조제1항제2호 부터 제10호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1항에 따른 적용비율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미술작품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미술·건축·환경·공간 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 지사가 위촉한다.
-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④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3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34조(심의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의 운영) ①심의회위원회 회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⑤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회의공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24조·제27조 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문화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설계변경허가일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경상북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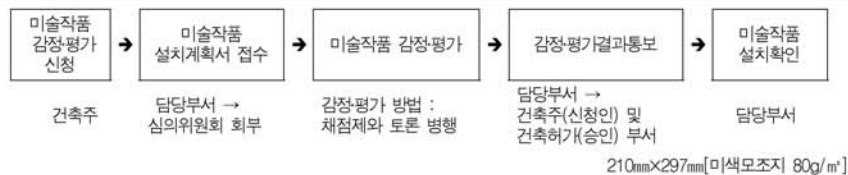
- 83 -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 - 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 - 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 - 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 - 작가 계약서 및 작가 - 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나. 건축주 - 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 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자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
 -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 (1) 건축개요
 - (2) 주위현황도
 - (3) 건축물투시도
 -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 (5) 미술작품개요
 -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 (8) 작품설명판(표식)
 -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 (6) 작품설명판(표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경상북도에서 별도요청 시)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별지 제6호 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위치	
----	--

건축주	
-----	--

건축물 총 연면적				m ²
	구분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건축물연면적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	---------------------------	--------------	-------------	---------------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	---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재질			
	크기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원형제작비	천원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기타	천원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천원	%	분수	천원
	합계				기타	천원

유의사항

-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장·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	------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11호 서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관련]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신축 []증축				
	규모		연면적		용도					
	지하 층/지상 층		㎡							
미술작품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총설치수					총가액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원				
미술작품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4.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 2 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 5 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법 제6조에 의한 도지사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 9 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도지사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 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③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등

제17조(기관 평가) 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군 등 공공기관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군 등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

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 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북도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
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민감군 영향”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예보 및 경보는 경상북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황사예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5 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②경보의 발령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6 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

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 및 경로당 등의 이용자,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 7 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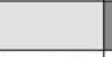
제 8 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 제3조와 제6조 중 예보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
예보기준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text{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600
색 구분						
	(파란색)	(초록색)	(노랑색)	(주황색)	(빨강색)	(갈색)

【별표 2】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mu\text{g}/\text{m}^3$ 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mu\text{g}/\text{m}^3$ 를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비 고 : 해제기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
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별표 3】

미세먼지 정보발령에 따른 주민행동요령(제6조 관련)

구분	시 민 건 강 보 호	대 기 오 염 저 감
주 의 보	가. 노인·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나. 유치원·초등학교의 야외수업 금지 다. 중·고등학교의 야외수업 자제 라.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 활동 자제 마.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 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의 조업시간 단축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노인·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나. 유치원·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다. 중·고등학교의 야외수업 금지 라. 일반 주민의 운동 등 과격한 야외 활동 자제 마.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 활동 금지 바.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금지 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의 조업 중지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 3 조(동물의 등록)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3개월령 미만은 3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에, 3개월령 이상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주입, 체외 부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등록대행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별표 12”의 등록등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⑤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12조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적정한 사육·관리)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광견병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9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동물

②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제 7 조(동물보호센터 지정)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유기동물의 포획)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②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시행령 제17조 및 제③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법 제21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하지 아니할 자

제13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시장·군수는 동물보호

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시장·군수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 50%
5.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3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방접종 대상 동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한 자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 (사)물가협회 노임관리비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사)물가협회 노임관리비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 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 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6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
2.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①도지사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거주하는 주택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별표】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소화기구	소화기	1.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		1.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할 것) 2.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4.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예 산 안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6. 26(화)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상북도의회

차 례

1. 소관기관.....	125
2. 심사경과.....	125
3. 제안설명 요지	125
4. 예산편성 방향.....	125
5. 예산(안).....	126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39
7. 질의 및 답변 요지	154
8. 토론 요지	154
9. 심사 결과.....	154
10. 소수의견 요지	154
11. 기타 필요한 사항.....	154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5. 31, 경상북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1 : 상정·질의·토론)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2 : 상정·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윤 종 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4. 예산편성 방향

- 재정 건전화 최우선(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재원 최대한 활용)
- 일자리 창출 등 도정 현안사업 적극 반영
- SOC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 재정보전금,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 초·중학생 무상급식, 학교폭력 예방 등 당면사업 반영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499,160	100.0	6,135,725	100.0	363,435	5.9
일 반 회 계	5,502,935	84.7	5,150,000	83.9	352,935	6.9
특 별 회 계	996,225	15.3	985,725	16.1	10,500	1.1
의료급여기금운영	423,975	6.5	422,572	6.9	1,403	0.3
치 수 사 업	45,090	0.7	44,240	0.7	850	1.9
경북도립대학운영	9,791	0.2	9,110	0.1	681	7.5
광 역 교 통 시 설	4,163	0.1	4,321	0.1	△158	△3.6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4,595	0.8	54,170	0.9	425	0.8
학교용지부담금	4,800	0.1	1,312	0.0	3,488	265.9
지역개발기금운영	453,812	7.0	450,000	7.3	3,812	0.9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499,160	100.0	6,135,725	100.0	363,435	5.9
자 체 수 입		1,878,278	28.9	1,774,747	28.9	103,531	5.8
	지방세 수입	1,140,100	17.5	1,100,100	17.9	40,000	3.6
	세 외 수 입	738,178	11.4	674,647	11.0	63,531	9.4
	경상적수입	66,889	1.0	66,650	1.1	239	0.4
	임시적수입	671,289	10.3	607,996	9.9	63,292	10.4
의 존 수 입		4,620,883	71.1	4,360,978	71.1	259,905	6.0
	지방교부세	1,090,208	16.8	980,921	16.0	109,286	11.1
	보 조 금	3,300,675	50.8	3,150,057	51.3	150,618	4.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30,000	3.5	230,000	3.8	0	0.0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499,160	100.0	6,135,725	100.0	363,435	5.9
일 반 공 공 행 정	1,132,653	17.4	1,071,984	17.5	60,669	5.7
공공질서 및 안전	326,311	5.0	314,964	5.1	11,347	3.6
교 육	10,046	0.2	8,653	0.1	1,393	16.1
문 화 및 관 광	428,689	6.6	384,645	6.3	44,044	11.5
환 경 보 호	575,965	8.9	549,841	9.0	26,124	4.8
사 회 복 지	1,702,399	26.2	1,647,111	26.8	55,288	3.4
보 건	74,999	1.2	63,650	1.0	11,349	17.8
농 립 해 양 수 산	936,693	14.4	911,684	14.9	25,009	2.7
산 업 중 소 기 업	198,342	3.1	184,347	3.0	13,995	7.6
수 송 및 교 통	312,228	4.8	274,911	4.5	37,317	13.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45,959	5.3	293,291	4.8	52,668	18.0
과 학 기 술	18,083	0.3	16,113	0.3	1,970	12.2
예 비 비	77,830	1.2	66,829	1.1	11,000	16.5
기 타	358,965	5.5	347,703	5.7	11,262	3.2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499,160	100.0	6,135,725	100.0	363,435	5.9
의 회 사 무 처	13,152	0.2	12,983	0.2	169	1.3
공 보 관	3,089	0.1	2,799	0.1	290	10.4
미래전략기획단	2,940	0.1	2,865	0.1	75	2.6
여 성 정 책 관	317,078	4.9	287,869	4.7	29,209	10.2
도청이전추진본부	122,604	1.9	77,411	1.3	45,193	58.4
환경특별관리단	1,150	0.0	1,037	0.0	113	10.9
기 획 조 정 실	831,017	12.8	772,734	12.6	58,283	7.5
일자리경제본부	212,911	3.3	191,146	3.1	21,765	11.4
공 무 원 교 육 원	6,157	0.1	6,001	0.1	155	2.6
감 사 관 실	480	0.0	390	0.0	90	23.2
보 건 복 지 국	1,428,795	22.0	1,392,885	22.7	35,910	2.6
행 정 지 원 국	488,131	7.5	475,586	7.8	12,546	2.6
환경해양산림국	802,428	12.4	770,913	12.6	31,515	4.1
보건환경연구원	8,905	0.1	8,894	0.1	11	0.1
농 수 산 국	701,332	10.8	682,209	11.1	19,123	2.8
농 업 기 술 원	51,310	0.8	50,334	0.8	976	1.9
투 자 유 치 본 부	70,760	1.1	65,554	1.1	5,206	7.9
문화관광체육국	421,454	6.5	380,664	6.2	40,790	10.7
건설도시방재국	767,532	11.8	727,391	11.9	40,140	5.5
낙동강살리기사업단	11,814	0.2	7,904	0.1	3,909	49.5
소 방 본 부	226,331	3.5	209,047	3.4	17,284	8.3
경 북 도 립 대 학	9,791	0.2	9,110	0.2	681	7.5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499,160	100.0	6,135,725	100.0	363,435	5.9
인 건 비	281,535	4.3	269,436	4.4	12,099	4.5
물 건 비	142,218	2.2	133,258	2.2	8,961	6.7
경 상 이 전	2,497,232	38.4	2,368,998	38.6	128,234	5.4
자 본 지 출	2,610,465	40.2	2,420,406	39.5	190,059	7.9
융자 및 출자	261,429	4.0	245,629	4.0	15,800	6.4
보 전 재 원	154,170	2.4	149,050	2.4	5,120	3.4
내 부 거 래	376,562	5.8	372,520	6.1	4,042	1.1
예비비 및 기타	175,550	2.7	176,429	2.9	△879	△0.5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502,935	100.0	5,150,000	100.0	352,935	6.9
지 방 세 수 입		1,140,100	20.7	1,100,100	21.4	40,000	3.6
세 외 수 입		268,075	4.9	215,044	4.2	53,031	24.7
	경상적수입	27,085	0.5	26,869	0.5	216	0.8
	임시적수입	240,989	4.4	188,175	3.7	52,814	28.1
지 방 교 부 세		1,090,208	19.8	980,921	19.1	109,287	11.1
보 조 금		2,954,553	53.7	2,803,935	54.5	150,618	5.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0,000	0.9	50,000	1.0	0	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502,935	100.0	5,150,000	100.0	352,935	6.9
일 반 공 공 행 정	678,861	12.3	622,004	12.1	56,857	9.1
공공질서 및 안전	326,311	5.9	314,964	6.1	11,347	3.6
교 육	5,009	0.1	4,219	0.1	790	18.7
문 화 및 관 광	428,689	7.8	384,645	7.5	44,044	11.5
환 경 보 호	575,965	10.5	549,841	10.7	26,124	4.8
사 회 복 지	1,278,423	23.2	1,224,539	23.8	53,885	4.4
보 건	74,999	1.4	63,650	1.2	11,349	17.8
농 립 해 양 수 산	936,693	17.0	911,684	17.7	25,009	2.7
산업 중소기업	143,748	2.6	130,177	2.5	13,571	10.4
수 송 및 교 통	308,065	5.6	270,590	5.3	37,475	13.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96,069	5.4	247,739	4.8	48,330	19.5
과 학 기 술	18,083	0.3	16,113	0.3	1,970	12.2
예 비 비	77,830	1.4	66,829	1.3	11,000	16.5
기 타	354,191	6.4	343,007	6.7	11,184	3.3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502,935	100.0	5,150,000	100.0	352,935	6.9
의 회 사 무 처	13,152	0.2	12,983	0.3	169	1.3
공 보 관	3,089	0.1	2,799	0.1	290	10.4
미래전략기획단	2,940	0.1	2,865	0.1	75	2.6
여 성 정 책 관	317,078	5.8	287,869	5.6	29,209	10.2
도청이전추진본부	122,604	2.2	77,411	1.5	45,193	58.4
환경특별관리단	1,150	0.0	1,037	0.0	113	10.9
기 획 조 정 실	377,205	6.9	322,734	6.3	54,471	16.9
일 자리 경 제 본 부	158,317	2.9	136,976	2.7	21,341	15.6
공 무 원 교 육 원	6,157	0.1	6,001	0.1	155	2.6
감 사 관 실	480	0.0	390	0.0	90	23.2
보 건 복 지 국	1,004,820	18.3	970,313	18.8	34,507	3.6
행 정 지 원 국	488,131	8.9	475,586	9.2	12,546	2.6
환경해양산림국	802,428	14.6	770,913	15.0	31,515	4.1
보건환경연구원	8,905	0.2	8,894	0.2	11	0.1
농 수 산 국	701,332	12.7	682,209	13.3	19,123	2.8
농 업 기 술 원	51,310	0.9	50,334	1.0	976	1.9
투 자 유 치 본 부	70,760	1.3	65,554	1.3	5,206	7.9
문 화 관 광 체 육 국	421,454	7.7	380,664	7.4	40,790	10.7
건 설 도 시 방 재 국	713,479	13.0	677,518	13.2	35,961	5.3
낙동강살리기사업단	11,814	0.2	7,904	0.2	3,909	49.5
소 방 본 부	226,332	4.1	209,047	4.1	17,284	8.3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502,935	100.0	5,150,000	100.0	352,935	6.9
인 건 비	277,833	5.1	265,759	5.2	12,074	4.5
물 건 비	136,594	2.5	128,375	2.5	8,220	6.4
경 상 이 전	2,026,696	36.8	1,901,288	36.9	125,408	6.6
자 본 지 출	2,555,671	46.4	2,366,332	46.0	189,339	8.0
용 자 및 출자	37,129	0.7	36,329	0.7	800	2.2
보 전 재 원	14,330	0.3	14,330	0.3	0	0.0
내 부 거 래	371,417	6.8	370,759	7.2	658	0.2
예비비 및 기타	83,265	1.5	66,829	1.3	16,435	24.6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96,225	100.0	985,725	100.0	10,500	1.1
의료급여기금운영	423,975	42.6	422,572	42.9	1,403	0.3
치 수 사 업	45,090	4.5	44,240	4.5	850	1.9
경북도립대학운영	9,791	1.0	9,110	0.9	681	7.5
광역교통시설	4,163	0.4	4,321	0.4	△158	△3.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4,595	5.5	54,170	5.5	425	0.8
학교용지부담금	4,800	0.5	1,312	0.1	3,488	265.9
지역개발기금운영	453,812	45.6	450,000	45.6	3,812	0.9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96,225	100.0	985,725	100.0	10,500	1.1
세 외 수 입	470,103	47.2	459,603	46.6	10,500	2.3
경상적 수입	39,803	4.0	39,781	4.0	22	0.1
임시적 수입	430,300	43.2	419,822	42.6	10,478	2.5
보 조 금	346,122	34.7	346,122	35.1	0	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0,000	18.1	180,000	18.3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96,225	100.0	985,725	100.0	10,500	1.1
일반공공행정	453,792	45.6	449,980	45.7	3,812	0.9
교육	5,037	0.5	4,434	0.5	603	13.6
사회복지	423,975	42.6	422,572	42.9	1,403	0.3
산업중소기업	54,595	5.5	54,170	5.5	425	0.8
수송 및 교통	4,163	0.4	4,321	0.4	△158	△3.7
국토 및 지역개발	49,890	5.0	45,552	4.6	4,338	9.5
기 타	4,773	0.5	4,696	0.5	78	1.7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96,225	100.0	985,725	100.0	10,500	1.1
기 획 조 정 실	453,812	45.6	450,000	45.7	3,812	0.9
예산담당관실	453,812	45.6	450,000	45.7	3,812	0.9
일자리경제본부	54,595	5.5	54,170	5.5	425	0.8
에너지정책과	54,595	5.5	54,170	5.5	425	0.8
보 건 복 지 국	423,975	42.6	422,572	42.9	1,403	0.3
사 회 복 지 과	423,975	42.6	422,572	42.9	1,403	0.3
건설도시방재국	54,053	5.4	49,873	5.1	4,180	8.4
균 형 개 발 과	4,163	0.4	4,321	0.4	△158	△3.7
치 수 방 재 과	45,090	4.5	44,240	4.5	850	1.9
건축디자인과	4,800	0.5	1,312	0.1	3,488	265.9
경 북 도 립 대 학	9,791	1.0	9,110	0.9	681	7.5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96,225	100.0	985,725	100.0	10,500	1.1
인 건 비	3,702	0.4	3,677	0.4	25	0.7
물 건 비	5,624	0.6	4,883	0.5	741	15.2
경 상 이 전	470,536	47.2	467,710	47.5	2,826	0.6
자 본 지 출	54,794	5.5	54,074	5.5	720	1.3
용 자 및 출 자	224,300	22.5	209,300	21.2	15,000	7.2
보 전 재 원	139,840	14.0	134,720	13.7	5,120	3.8
내 부 거 래	5,144	0.5	1,761	0.2	3,383	192.1
예비비 및 기타	92,285	9.3	109,600	11.1	△17,315	△15.8

라.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가. 총 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조 1,357억원보다 3,634억원(5.9%)이 증액
된 6조 4,992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1,500억원보다 3,529억원
(6.9%)이 증액된 5조 5,029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57억원보다 105억원(1.1%)이
증액된 9,962억원임.

◆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4,992	100.0	61,357	100.0	3,634	5.9
일반회계	55,029	84.7	51,500	83.9	3,529	6.9
특별회계	9,962	15.3	9,857	16.1	105	1.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5조 1,500억원보다 3,529억원(6.9%)이
증액된 5조 5,029억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4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세외수입의 순증은 530억원으로
 - 잉여금 268억원, 전입금 114억원, 부담금이 77억원 등임.
- 중앙지원금은 2,599억원으로
 - 지방교부세 1,093억원, 보조금 1,506억원이며,
 - 주요 내역은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분('11년 정산분 포함) 887억원
 - 영유아 보육료 227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02억원
 - 운동장 체육생활시설 지원 56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62억원
 - 말농업 직접 직불제 95억원
 - 살처분 보상금 100억원
 - 국가지원 지방도 77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690억원
-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702억원
- 사회복지, 보건 부문 652억원
- 농림해양수산 부문 250억원
-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부문 155억원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858억원
- 기타 부문에 112억원

- 예비비는 110억원을 증액하였음.

라)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121억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82억원 증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1,254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1,893억원 증액
- 융자 및 출자금에서 8억원,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7억원 증액
- 예비비는 164억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9,857억원보다 105억원(1.1%)이 증액된 9,962억원임.

나) 의료급여기금운영은

-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4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에 14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치수사업은

-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확보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함.

라) 경북도립대학운영은

- 세입에서 전입금 7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PRIDE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교육역량 강화 사업 대응 투자비)등에 증액 계상함.

마) 광역교통시설은

-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예비비에 2억원을 감액 계상함.

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원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함.

사) 학교용지부담금은

- 세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및 잉여금에서 3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및 교부금으로 35억원을 계상함.

아) 지역개발 기금운영은

- 세입에서 이월금으로 3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 상환금 등에 20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67억원을 감액 계상함.

다. 채무부담행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음.

라.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 부문에서 4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내수 경기가 호전됨에 따른 것이며, 당초 예상한 징수액 보다 늘어나 재정 운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최근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道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과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 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재정 편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268억원을 편성하여 총 1,26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수여건 및 전망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존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1,093억원**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12년도 확정분 554억원, '11년도 정산분 333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53.7%)¹⁾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도민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1) 국고보조금 세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국고보조금	2,954,553	53.7%	2,803,935	54.5%	150,618	5.4%	

나) 세출예산

○ 금번 추경 예산안은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FTA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주 요 사 업	예산액
투자기반 조성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4
	○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	15
	○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 등	116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과 학교폭력 예방	○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260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7
	○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305
FTA 대응 농업기반 육성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	○ 발농업 직접직불제(23시군, 23천ha)	95
	○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군위)	26
	○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임산물) 지원 등	129
도청이전 추진 및 지역개발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13.5km)	300
	○ 도본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150
	○ 지방도사업(36개지구) 등	428
관광활성화 및 문화체육기반 조성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187건)	116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16개소)	56
	○ 신라문화탐방바닷길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268
재해예방, 환경보호 및 기타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구미)	125
	○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5개 시군)	104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비비 등	925

○ 세출예산의 기능별²⁾ 특이사항은

- 교육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18.7%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군 학생 공감드림캠프 운영, 학교폭력 상담인력 및 학부모 상담자원 봉사자 교육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483억원(기정대비 19.5% 증)이나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지원도로 예산의 국비 예산 추가 반영 및 구조물 구간 우선 보상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³⁾ 특이사항은

-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452억원(기정대비 58.4% 증)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5.9%)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도청 이전에 따른 도본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비 및 신도시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이며,
-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39억원(기정대비 49.5% 증)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자본적(시설비) 성격의 예산은 추경 예산보다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사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3) 심사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표 참조

○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⁴⁾ 사업은

-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50% 이상 증액(사업비 1억원 이상)이 있는 주요사업은 『청년 창업지원 센터 운영 지원』 외 35개 사업이며, 50% 이상 감액(기정예산 1억원 이상)이 있는 주요사업은 『RPC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외 6개 사업임.
- 이 중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무양~남장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등에서는 400% 이상 증액이 있는 반면, 지열 이용 효율화 사업 등에서는 60% 이상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일자리창출단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지원	600	200	400	200.0	
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257	309	948	306.8	
체육진흥과	김천국민체육센터건립	600	200	400	200.0	
물산업과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12,904	2,457	10,448	425.2	
식품유통과	RPC건조저장시설지원	300	860	△560	△65.1	
축산경영과	지열이용효율화사업(농어업에너지효율화)	228	741	△512	△69.1	
도시계획과	현신~사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092	3,231	△2,139	△66.2	
#	무양~남장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052	469	2,583	550.7	

4)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 <자료 1>에 게재함.

-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우선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시도 행정시스템 보강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지역 인재 육성 활성화 사업 등 전액 감액 시킨 사업⁵⁾과 50% 이상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신규로 편성한 사업⁶⁾은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110건에 1,682억원으로 추경재원 3,634억원의 46.3% 수준이며, 경상적 경비도 상당부분 계상되어 있음.
- 주요사업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27억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118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56억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26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297억원) 등이 있음.

5)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 <자료 2>에 게재함.

6)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 <자료 3>에 게재함.

◆ 주요 신규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관	친환경생활공간조성	2,730	
민생경제교통과	시의버스유류비지원	4,00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11,831	과목변경
체육진흥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600	
물산업과	도청이전신도시용수공급시설사업비지원	2,0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2,600	
"	발농업직접직불제	9,472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친수시설)	4,102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개설공사	29,654	
소방본부	초과근무수당소송미참가지수당지급(수당)	7,600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처럼 사업주체 및 과목 변경과 세부사업 변경, 재원 대체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당초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 재원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조성한 추경 재원인 만큼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은 규모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신규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도 이루어 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반려된 사업이 재검토 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기정예산 25.1%⁷⁾가 증가한 99억원으로 추경예산 증가율(5.9%)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道の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 또한,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발생과 관련하여 출연기관의 청렴도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임직원 업무역량 강화,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기관 혁신, 경영성과 부진 기관장에 대한 문책 기준 강화, 감사 전담부서 신설 및 상시 직무감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 선진화를 추진하여 스스로 청렴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7)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출연금(306-01)	49,536	39,605	9,930	25.1%	

◆ 주요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⁸⁾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운영	988	895	93	10.4	
신성장산업과	2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R&D등)	9,221	8,190	1,031	12.6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과제공모사업	600	0	600	100.0	
"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구축	1,500	0	1,500	100.0	
다문화행복과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937	778	159	20.4	
녹색환경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423	2,181	242	11.1	
관광마케팅사업단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준비지원	650	0	650	100.0	
"	전시유물디지털컨텐츠제작지원	500	0	500	100.0	

○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용역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연구용역비는 34.3% 증가한 19억원을 증액 계상함.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이번에 계상된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로 계상한 사업건수도 상당히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 보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8)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4>에 게재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공보관실	민선자치경북도정사발간	250	0	250	100.0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800	1,400	400	28.6	
녹색환경과	경상북도도양보전계획수립용역	50	0	50	100.0	
물산업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	45	0	45	100.0	
수산진흥과	FTA대응해삼특화단지조성	70	0	70	100.0	
투자유치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지정기본 구상용역	600	0	600	100.0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디자인산업육성방안용역	80	0	80	100.0	
"	경상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기본 계획수립용역	50	0	50	100.0	
국제통상과	국제교류센터및국제우호공원조성	20	0	20	100.0	
"	경북국제그랜드플랜추진마스터 용역	100	0	100	100.0	
도시계획과	공공택지수립계획수립용역	30	0	30	100.0	
균형개발과	혁신도시중장기투자유치세부실행 계획수립용역	30	0	30	10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낙동강연안광역계획수립	200	0	200	100.0	

※ 예산액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조정된 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교육청 소유부지 및 건물매입』 등 5건에 29억원임.
 - 본예산 심사 때와 달리 상황 변경에 따라 다시 추경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초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조정한 예산안을 또 다시 추경예산에 올려 재론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재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하는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당초예산 삭감·조정분 추경 반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당초예산 삭감조정액	추경편성액	비고
다문화행복과	도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운영지원	△208	208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채무상환	△535	535	
"	안동의료원채무상환	△35	35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00	400	
회계계약심사과	교육청소유부지및건물매입	△2,000	1,700	

2) 특별회계

- 道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모두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증감조서 :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 고 자 료



-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주요 신규 편성 사업 현황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자료 1〉

◆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일자리창출단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지원	600	200	400	200.0	
민생경제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지원	967	342	625	182.7	
에너지정책과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조성사업홍보	400	200	200	100.0	
여성정책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1,555	955	600	62.8	
"	국공립·법인어린이집기능보강	300	100	200	200.0	
"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162	360	△198	△55.0	
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257	309	948	306.8	
"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413	147	267	181.6	
보건정책과	분만취약지운영비지원	800	400	400	100.0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광역자치단체사업	160	100	60	60.0	
인재양성과	대구경북인재육성개발원(RHRD)센터운영비	40	100	△60	△60.0	
문화예술과	경주브랜드상설공연지원	400	200	200	100.0	
문화재과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1,500	786	713	90.7	
"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마련	300	150	150	100.0	
관광진흥과	신라문화탐방바닷길조성	4,514	2,257	2,257	100.0	
체육진흥과	울릉국민체육센터건립	1,300	800	500	62.5	
체육진흥과	김천국민체육센터건립	600	200	400	200.0	
"	영양국민체육센터건립	1,400	700	700	100.0	
녹색환경과	전기자동차보급	1,130	360	770	213.9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지원	317	119	198	166.4	
"	슬레이트처리지원	1,189	717	472	65.8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녹색환경과	청량산도립공원시설정비('12재정 조기집행우수기관인센티브)	500	200	300	150.0	
"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	1,500	750	750	100.0	
"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지원	300	200	100	50.0	
물산업과	하천쓰레기정화사업	888	546	342	62.6	
"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12,904	2,457	10,448	425.2	
"	공중화장실물절약(중수도)시설구축	208	130	78	60.0	
식품유통과	RPC건조저장시설지원	300	860	△560	△65.1	
축산경영과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1,040	520	520	100.0	
"	경북도립대학축산학과신설장학금 지원	72	150	△78	△52.0	
"	지열이용효율화사업(농어업에너 지효율화)	228	741	△512	△69.1	
도시계획과	현신~사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092	3,231	△2,139	△66.2	
"	무양~남장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052	469	2,583	550.7	
도로철도과	왜관가산간국지도건설	23,263	13,746	9,517	69.2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 사업	96	417	△321	△77.0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포장도정비사업시설비	1,467	872	595	68.2	
건축디자인과	학교용지부담금전출금	4,644	1,261	3,383	268.3	
포항북부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30	146	84	57.5	
경주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10	134	77	57.4	
영주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04	129	74	57.3	
문경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19	139	80	58.0	
경산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21	141	81	57.4	
의성소방서	출동수당(의용소방대지원경비)	213	135	78	57.8	

※ 증액사업은 예산액, 감액사업은 기정액 기준 1억원 이상만 작성함.

〈자료 2〉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정보통신담당관	시도행정시스템보강 및 재해복구체계구축	0	170	△170	△100.0	
민생경제교통과	지역핵심자원지식재산등록	0	19	△19	△100.0	
보건정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	0	27	△27	△100.0	
"	결핵소집단유행관리요원	0	29	△29	△100.0	
"	병의원결핵관리전담간호사지원	0	87	△87	△100.0	
자치행정과	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	0	944	△944	△100.0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육성활성화사업	0	500	△500	△100.0	
"	담주변초등학교영어교육지원	0	50	△50	△100.0	
체육진흥과	도장애인체육회업무용차량구입지원	0	37	△37	△100.0	
친환경농업과	과실브랜드육성지원	0	196	△196	△100.0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배합사료지원	0	90	△90	△100.0	

※ 기정액 기준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자료 3〉

◆ 주요 신규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관	2012대한민국독도성화봉송대회	300	
"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2,730	
"	우리마을녹색길경관조성	450	
정보통신담당관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400	
민생경제교통과	외국인투자기업입지보조금	600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지원	360	
"	시외버스유류비지원	4,000	
"	대구-칠곡광역BIS구축사업	400	
"	디지털은행기록장치장착지원	728	
"	환승주차장건설비지원(이양)	2,079	
과학기술과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500	
"	경북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000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550	
신성장산업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과제공모사업	600	
"	대경권IT융합SMART금형기술고도화사업추진	438	
"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구축	1,500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840	
에너지정책과	원자력클러스터주민수용성제고사업	300	
투자유치단	투자기업고용보조금지원	3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투자유치단	투자기업산업인프라지원	700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지정기본구상용역	600	
여성정책관	둘째아출산장려금지원	900	
노인복지과	치매거점병원기능보강사업	1,600	
"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	7,627	
"	경로당양곡비지원	1,083	
"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비지원	400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491	
다문화행복과	청소년문화센터건립	500	
보건정책과	김천의료원기능강화	2,000	
"	안동의료원기능강화	2,400	
"	포항의료원채무상환(출연금)	535	
"	분만취약지시설장비지원	1,600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출연금)포항의료원	783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출연금)김천의료원	783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출연금)안동의료원	800	
"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	675	
"	민간협력보건소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	892	
"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확충	500	
자치행정과	공명선거추진홍보비	500	
인재양성과	면지역초·중학생급식비지원	84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11,831	과목 변경
"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도시관리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6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	새마을세계화재단운영	500	
"	여권발급대행기관운영지원	364	
회계계약심사과	교육청소유부지 및 건물매입	1,700	
문화예술과	고령문화예술회관건립	1,200	세부 사업 변경
"	성주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	662	"
"	포항중앙도서관건립	1,071	"
"	영천시립도서관건립	700	"
"	칠곡석적도서관건립	800	"
"	고령문화원건립	700	"
"	김천시립미술관건립	439	"
"	청송군립야송미술관야외전시관건립	700	"
"	슬거미술관건립	650	"
"	소천권태호선생음악관건립	1,322	"
"	권정생어린이문학관조성	400	"
"	2012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300	
"	임진관7갑주년기념행사지원	910	세부 사업 변경
"	포항스틸페스티벌개최지원	700	재원 변경
"	원이엄마3D영상콘텐츠제작지원	510	
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긴급보수	819	
"	경상북도중가고택통합관리시스템구축	300	
관광진흥과	여중군자장계향선생추모관건립	500	
"	관광특구활성화인프라구축	910	
"	해파랑길조성	358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관광마케팅사업단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	600	
"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준비지원(출연금)	650	
"	전시유물및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출연금)	500	
"	동대구역내경북관광홍보물설치(일반수용비)	300	
체육진흥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600	
"	농어촌복합체육시설지원	600	
"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건립지원	1,560	
"	레저스포츠시설조성지원	550	
물산업과	도청이전신도시용수공급시설사업비지원	2,000	
해양개발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보강시설지원	600	
산림자원개발원	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기본설계비	397	
농업정책과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1,50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2,600	
"	발농업직접지불제	9,472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444	
농촌개발과	구성지제방보수	800	
"	효선지제방확장	1,000	
"	묵곡지제당뚝마루보강	700	
축산경영과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345	
"	축산분뇨처리시설(국고보조금반환금)	422	
"	시도기축방역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1,629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983	
경마장건설지원단	학생승마활성화사업(마사회적립금)-초중고승마체험지원	360	
"	마필산업육성사업	975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배합사료시범양식사업	834	
도시계획과	자전거거점도시육성	650	
균형개발과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건립실시설계용역비	1,000	
도로철도과	고령개진간국지도건설	2,450	
"	조교임고간국지도건설	800	
"	주하~도진도로확포장	1,000	
치수방재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외-하천관리)	3,419	
"	4.2~4.4강풍랑피해재해복구	364	
건축디자인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	1,200	
"	골별국향교에서서원까지사업	390	
"	낙단보주변경관개선사업('12재정조기집행우수기관인센티브)	300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소이전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낙동강호국평화공원건립(이양)	2,408	
"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조성(이양)	450	
"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친수시설)	4,102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개설공사	29,654	
"	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개설공사감리비	300	
소방본부	노후소방차량교체	2,000	
"	공기호흡기(223세트)	446	
"	초과근무수당소송미참가자수당지급(수당)	7,600	
"	시보임용예정자보수(기타직보수)	668	
계		168,152	

※ 총사업비 3억원 이상만 작성함.

〈자료 4〉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운영	988	895	93	10.4	
민생경제교통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추진	540	390	150	38.5	
"	교통연수원운영비지원	755	680	75	11.0	
신성장산업과	2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 등)	9,221	8,190	1,031	12.6	
"	지역전략산업기업지원사업국비정산금반납	286	0	286	100.0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과제공모사업	600	0	600	100.0	
"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추진단운영	150	0	150	100.0	
"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구축	1,500	0	1,500	100.0	
"	포항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350	300	50	16.7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운영지원	940	920	20	2.2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532	479	53	11.1	
다문화행복과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937	778	159	20.4	
"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	101	0	101	100.0	
"	도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운영지원	288	80	208	26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채무상환	535	0	535	100.0	
"	안동의료원채무상환	35	0	35	100.0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포항의료원)	783	0	783	100.0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김천의료원)	783	0	783	100.0	
"	찾아가는행복병원운영(안동의료원)	800	0	800	100.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재단운영	500	0	500	100.0	
"	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364	339	25	7.4	
녹색환경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423	2,181	242	11.1	
해양개발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	830	747	83	11.1	
독도정책과	독도특집다큐멘터리제작지원	100	0	100	100.0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운영비지원	659	560	99	17.7	
문화예술과	(재)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	2,339	2,219	120	5.4	
"	예술로만나는독도프로젝트	150	0	150	100.0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450	400	50	12.5	
관광마케팅사업단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준비지원	650	0	650	100.0	
"	전시유물및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	500	0	500	100.0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삭감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합 계		△2,110,000	
30	기획조정실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공통)	△100,000	
67	일자리경제본부	시외버스 유류비 지원	△700,000	
69	"	경북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00,000	
92	투자유치본부	경상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기본계획수립용역	△50,000	
100	감사관	명예감사관홈페이지구축	△10,000	
116	여성정책관	일·가정균형환경조성프로그램제작방영	△80,000	
140	보건복지국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비지원	△200,000	
143	"	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국제교류지원	△30,000	
143	"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100,000	
149	"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300,000	
222	문화관광체육국	천년왕국신라의 재조명	△50,000	
222	"	경상북도중가고택통합관리시스템구축	△50,000	
224	"	내성천 바이크 로드 조성	△30,000	
290	농수산국	젊은 농·어업인 포럼	△10,000	
377	건설도시방재국	종합건설사업소청사이전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300,000	

【증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합 계		2,110,000	
33	기획조정실	예비비	2,110,000	

【과목변경】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과 목 명		비고
				당 초	변 경	
	계		150,000			
414	도청이전 추진본부	도청이전신도시(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150,000	308-1 자치단체경상보조	207-01 연구용역비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6. 26(화)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상북도의회

차 례

I. 소관부서	171
II. 심사경과	171
III. 제안설명의 요지	171
IV.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71
1. 총 규 모	171
2. 세입예산	172
3. 세출예산	174
V. 검토의견	180
VI. 질의 및 답변요지	189
VII. 토론요지	189
VIII. 심사결과	189
IX. 소수의견의 요지	189
X. 기타 필요한 사항	189

201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31,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12. 6. 18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2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1%에 해당하는 3,46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조 4,76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됨.

◆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세출	3,476,840	3,130,668	346,172	11.1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61억 7천만원(11.1%)이 증액된 3조 4,768억 4천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 9,705억원보다 2,049억 5천만원(6.9%)이 증액된 3조 1,754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019억원, 특별교부금 767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

지일반회계부담금 4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에서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6억 7천만원, 기초
자치단체전입금은 17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기타지원금 30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음.

○ 자체수입은

- 총 510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를 차지
하며, 기정예산 451억 2천만원보다 5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천만원, 자산임대 및 자산
매각대인 자산수입 34억 9천만원, 기타수입 24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기 타

-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총 2,503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150억 5천
만원보다 1,353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476,840	100.0	3,130,668	100.0	346,172	11.1
이 전 수 입	소 계	3,175,445	91.3	2,970,495	97.0	204,950	6.9
	중앙정부입	2,916,095	83.9	2,737,069	89.1	179,026	6.5
	지방자치단체입	256,301	7.3	233,426	7.9	22,875	9.8
	기타이전수입	3,049	0.1	0	0.0	3,049	순증
자 체 수 입	소 계	51,045	1.5	45,121	1.4	5,925	13.1
	교수-학습활동수입	30,940	0.9	30,940	1.0	0	0.0
	행정활동수입	593	0.0	581	0.0	12	2.1
	자산수입	4,992	0.2	1,500	0.0	3,492	232.8
	이자수입	12,099	0.3	12,099	0.4	0	0.0
	기타수입	2,422	0.1	1	0.0	2,421	193,035.0
기 타	소 계	250,350	7.2	115,052	1.5	135,298	117.6
	전년도이월금	250,350	7.2	115,052		135,298	117.6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61억 7천만원(11.1%)이 증액된 3조 4,768억 4천만원으로 정책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3조 153억 9천만원보다 2,854억 1천만원(9.5%)이 증액된 3조 3,0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예산은 정규직 인건비가 23억원이 증액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48억 1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8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교과교실제 추진 110억원, 학교폭력예방지원 31억원, 방과 후 학교운영프로그램에 222억 4천만원, 특성화고 교육사업에 101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운영에 54억 9천만원, 유치원종일제운영 26억 1천만원 등 1,000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무상교육비지원에 74억 4천만원, 초·중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7억 6천만원, 학생중식지원 29억 7천만원, 농산어촌학교지원 28억원, 만5세 아 누리과정운영 46억 2천만원 등 25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학교보건운영관리에 10억 7천만원, 급식학교 기구교체 및 확충에 25억 1천만원, 급식학교 현대화에 46억원, 위탁급식학교 직영 전환 지원 17억 5천만원,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및 토요일 스포츠데이 활성화에 18억 8천만원 등 131억원이 증액되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 80억 7천만원, 학교기타운영지원비 19억 7천만원, 사립유치원재정지원비 38억 7천만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54억 4천만원, 사립학교시설비지원이 197억 6천만원 등 37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학생 수용시설에 320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 등 학교일반시설에 398억 7천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89억 1천만원 등 1,007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음.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85억 7천만원보다 60억 6천만원(70.7%)이 증액된 146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에 해당하며

- 평생교육 예산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에 11억 8천만원,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에 38억 2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에 7억 1천만원 등 60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067억 1천만원보다 547억 1천만원 (51.3%)이 증액된 1,614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4%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교육정책기획관리에 63억 3천만원, 교육행정정보화지원에 20억 4천만원 등 10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본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22억 5천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141억원 등 16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27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76,840	100.0	3,130,668	100.0	346,172	11.1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소 계	3,300,804	94.9	3,015,395	96.3	285,410	9.5
	인적 자원 운용	1,628,076	46.8	1,619,430	51.7	8,646	0.5
	교수 - 학 습 원	334,671	9.6	234,626	7.5	100,046	42.6
	교육 복지 지원	169,877	4.9	144,414	4.6	25,463	17.6
	보건 / 급 식 / 동 체 육 활 동	39,798	1.1	26,695	0.9	13,103	49.1
	학교 재 정 관 리	839,988	24.2	802,615	25.6	37,373	4.7
	학교 교육 여 건 설	288,395	8.3	187,615	6.0	100,780	53.7
	평생 직업 교육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14,624	0.5	8,567	0.3	6,057	70.7
	평 생 교 육	11,580	0.4	5,523	0.2	6,057	109.7
	직 업 교 육	3,044	0.1	3,044	0.1	0	0.0
교육일반	소 계	161,412	4.6	106,706	3.4	54,706	51.3
	교육 행정 일반	37,672	1.1	26,958	0.9	10,714	39.7
	기관 운영 관리	41,562	1.2	25,214	0.8	16,348	64.8
	지방 채 상 환 료	37,453	1.0	37,453	1.2	0	0.0
	예 비 비 및 기	44,725	1.3	17,082	0.5	27,643	161.8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2조 2,977억 2천만원 보다 7.9% 증가한 2조 4,801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1.3%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5천만원보다 21.2%증가한 344억 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8,045 억원보다 19.6%증가한 9,622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액	%	금액	%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76,840	100	3,130,668	100	346,172	11.1
본 청	2,480,113	71.3	2,297,717	73.4	182,396	7.9
직속기관	34,474	1.0	28,446	0.9	6,028	21.2
지역교육청	962,253	27.7	804,505	25.7	157,748	19.6
포항교육청	149,677	4.3	132,246	4.2	17,431	13.2
경주교육청	83,023	2.4	69,175	2.2	13,848	20.0
김천교육청	64,057	1.8	57,666	1.8	6,392	11.1
안동교육청	56,836	1.6	51,890	1.7	4,946	9.5
구미교육청	143,273	4.1	92,130	2.9	51,143	55.5
영주교육청	45,960	1.3	35,878	1.1	10,082	28.1
영천교육청	37,625	1.1	33,748	1.1	3,877	11.5
상주교육청	41,567	1.2	36,145	1.2	5,422	15.0
문경교육청	25,820	0.7	20,743	0.7	5,077	24.5
경산교육청	90,801	2.6	79,055	2.5	11,746	14.9
군위교육청	12,969	0.4	12,209	0.4	760	6.2
의성교육청	18,515	0.5	16,516	0.5	1,999	12.1
청송교육청	14,235	0.4	11,653	0.4	2,582	22.2
영양교육청	8,510	0.2	6,938	0.2	1,572	22.7
영덕교육청	28,649	0.8	27,076	0.9	1,573	5.8
청도교육청	18,259	0.5	16,462	0.5	1,797	10.9
고령교육청	12,406	0.4	10,299	0.3	2,107	20.5
성주교육청	19,112	0.5	15,825	0.5	3,287	20.8
칠곡교육청	35,963	1.0	32,502	1.0	3,461	10.6
예천교육청	14,039	0.4	11,827	0.4	2,212	18.7
봉화교육청	14,790	0.4	13,260	0.4	1,530	11.5
울진교육청	18,263	0.5	15,510	0.5	2,753	17.8
울릉교육청	7,905	0.2	5,754	0.2	2,151	37.4

V. 검토의견

□ 세입부문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46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조 4,76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이전수입 2,049억 5천만원, 자체수입 59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35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 예산에 1,15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추경에 1,353억원(117.6%)이 증액된 2,50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수추계 결과로,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를 추경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고 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향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자산수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액 15억원에 비해 34억 9천만원(232.8%)이 증가한 4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목적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 및 기타 잡종재산의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의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한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6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그 동안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부담금 전입을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미비한 금액이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각고로 노력한 흔적이 보임.
-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부분은 기정액 대비 24억 2천만원 (193,035%)이 급증되었는데, 이는 경북장학회기부금 회수금, 경북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및 집행잔액반납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교육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출부문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해 살펴 보면 당초예산 보다 3,46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47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854억 1천만원, 평생·직업교육에 60억 6천만원, 교육일반 예산에 547억 1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학교폭력방지대책과 관련하여**
 - 학교내폭력 및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예산은 학교 내 취약지역 CCTV설치에 13억 1천만원, 학교안전통합 시스템구축사업인 Wee프로젝트 사업추진에 20억 3천

만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10억 7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최근 심각한 교내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폭력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학교폭력관련 추경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 업 항 목	기정액	추경액	증감액
합 계		9,306	18,878	9,572
1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Wee클래스 설치 운영비지원 · Wee센터 설치 운영 · Wee스쿨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교사 상담연수 · 전문상담인턴교사 상담역량 강화 연수	3,257	5,282	2,025
2 학교폭력 예방지원	· 또래상담활동운영 · 또래조정 · 게임과몰입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 ·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교 지원 ·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 교육법률지원단운영 상근 변호사 1명 채용 · 일진경보제 운영 지원 · 학교폭력 매뉴얼 보급 · 단위학교 폭력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근절 홍보 및 밥상머리 교육캠페인 추진 ·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연구회 운영 · 피해학생 선치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체 연수 ·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선정지원	5,495	6,566	1,071
3 인성교육	· 바른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교직원,학부모 연수 · 감사노트쓰기운동 전개 등	200	262	62
4 청소년 문화행사지원	· 1인1악기지원(음악부지원)	144	5,248	5,104
5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 학교성폭력예방CCTV설치	210	1,520	1,310

○ 학교시설 확충 사업 집행 철저

- 학교신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320억원, 급식 시설, 다목적교실, 생활관시설, 장애인시설 등 학교 일반시설에 398억 7천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298억 1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금회 추경에 학교교육 여건개설시설에 1,007억 8천만원(53.7%)이 증가된 2,883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최근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과 학교장에게 과도한 공사발주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각종 학교시설사업 공사계약 시 비리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사례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대규모의 시설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과교실제 추진지원 사업에 대하여

- 교과교실제 추진 사업은 교과 특성을 반영한 교과교실 환경구축과 학생 능력에 따른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도 교과교실제 전면확대 추진에 따라 추경에 110억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시범 시행 후 2014년까지 전면도입예정으로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전국 중교교의 90% 수준

에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될 것임.

- 금회 추경에 계상된 110억원 중에서 교과교실제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에 10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과교실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의 교원 충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 또한 교과부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휴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증축 및 중복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대규모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사업시행 시 철저한 관리계획으로 추진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예산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과후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은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완화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구현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토요 방과후 학교운영에 94억 4천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에 33억 1천만원 등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에 222억 4천만원이(48.3%) 증액된 682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이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이후 방과후 학교운영이 정규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의 수준을 넘어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우수 강사 발굴 및 취약 계층지원 강화 등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운영에 대해

- 평생교육부분을 살펴보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5억 3천만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38억 2천만원 등 기정액 대비 60억 6천만원(109.7%)이 증액되었음.
- 방과후 학교운영에서도 언급했듯이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교실 운영과 지역주민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힐 수 있는 학부모교육 확대실시 등의 평생교육활성화사업과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지역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환경 추구를 위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문명으로 평생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과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BTL⁹⁾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에 대해

- 경상북도 교육청의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44개교에 6,292억원으로 이 중 임대료가 5,010억원이며 운영비가 1,283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

(단위 : 억원)

학교수	채무부담행위액			상 환 액	상 환 계 획				
	임대료	운영비	합계	'08년~'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44개소	5,010	1,283	6,292	702	299	303	305	306	4,377

- BTL사업비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재정지출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할 때 BTL 사업의 투자금액,

9)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20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임.

건설규모, 임대료·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 **본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재반영 사업**

-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중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은 “전문상담인턴교사” 등 총13건에 49억 1천만원이며,
-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심사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진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재반영하려고 할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추경에 재반영된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내 용	삭감액	추경액	비고
합계(13건)			△4,766	4,910	
1	기획홍보담당관	평가자구노력비	△208	208	
2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만들기	△400	200	
3	생활지도과	전문상담인턴교사	△562	1,357	
4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시설설치	△306	196	
5	체육건강과	급식학교 노후기구교체	△550	550	
6	체육건강과	급식소 증·개축교 시설비	△1,355	878	
7	총무과	행정자료정리 일용인부임	△9	8	
8	학교지원과	교실 증축(영문고)	△428	428	
9	재무정보과	노후건물 철거및수리	△200	116	
10	재무정보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현지방문 국외여비	△30	33	
11	재무정보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	△500	500	
12	교육연구원	포상금 및 자구노력비	△213	429	
13	교육연수원	연수자료수집 여비	△7	7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도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61억 7천만원(11.1%)이 증가한 3조
4,768억 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정부의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분 등의 수입으로 편성되었음.

-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 추진, 공교육강화, 단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도모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취지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각종 비리 근절 및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 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12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합 계		△3,310,081	
188	행 정 예 산 과	학교회계직원현장체험연수	△10,000	
194	재 무 정 보 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	△500,000	
320	교 육 정 책 과	특수학급교실환경개선사업비지원(공립학교)	△300,000	
517	생 활 지 도 과	1인1악기운동	△1,610,000	
541	"	Wee스쿨설립	△93,340	
555	"	피해학생 선치료 지원	△200,000	
589	교 육 과 정 과	학부모아카데미	△56,000	
589	"	진로체험관구축운영	△120,105	
955	교육정보센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5,199	
969	학생문화회관	사서보조인건비	△5,577	
1022	행 정 예 산 과	손해배상금	△300,000	
1135	학생문화회관	LED조명등기구설치	△109,86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기)	감 액	비고
	합 계		3,310,081	
1146	행정예산과	예비비	3,310,081	

■ 결 산 안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6. 26(화)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경상북도의회

차 례

1. 소관기관	195
2. 심사경과	195
3. 제안설명의 요지	195
4. 세입·세출 결산	196
5. 세입·세출외 결산	207
6. 검토의견	213
7. 질의·답변요지	226
8. 토론요지	226
9. 심사결과	226
10. 소수의견 요지	226
11. 기타 필요한 사항	226
※ 보조자료	227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3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2. 6.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19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의 결산 승인

4.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괄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 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36억 88백만원¹⁰⁾을 포함하여 6조 1,154억 95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6조 1,550억 57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조 7,617억 18백만원이며
 - 차입잔액은 3,933억 39백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49억 78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B)	세출 (C)	잉 여 금 (B-C)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1,155	61,551	57,617	3,933	1,222	62	2,650
일 반 회 계	52,932	52,884	50,358	2,526	1,198	59	1,268
특 별 회 계	8,223	8,667	7,259	1,408	24	2	1,382

10) 심사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23억 46백만원을 포함하여 5조 2,931억 64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5조 2,883억 97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조 358억 25백만원이며
- 차인잔액은 2,525억 73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8억 24백만원임.

(2) 특별회계

○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42백만원을 포함하여 8,223억 32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8,666억 60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258억 93백만원이며
- 차인잔액은 1,407억 6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1억 54백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	금 액	비율 (%)	금 액	비율 (%)
예 산 현 액	6,115,495	100.0	5,293,164	100.0	822,332	100.0
세 입 결 산 액 (A)	6,155,057	100.6	5,288,397	99.9	866,660	105.4
세 출 결 산 액 (B)	5,761,718	94.2	5,035,825	95.1	725,893	88.3
차 인 잔 액 (A-B)	393,339	6.4	252,573	4.8	140,767	17.1
명시·사고이월	122,204	2.0	119,809	2.3	2,396	0.3
보조금집행잔액	6,157	0.1	5,940	0.1	217	0.0
순 세 계 잉 여 금	264,978	4.3	126,824	2.4	138,154	16.8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 입 (B)	세 출 (C)	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1,155	61,551	57,617	3,933	1,222	62	2,650	
일 반 회 계	52,932	52,884	50,358	2,526	1,198	59	1,268	
특 별 회 계	8,223	8,667	7,259	1,408	24	2	1,382	
공 기 업	소 계	3,334	3,763	2,683	1,080	0	0	1,080
	지역개발기금	3,334	3,763	2,683	1,080	0	0	1,080
기 타	소 계	4,889	4,903	4,576	327	24	2	301
	의료급여기금	3,989	3,996	3,981	15	0	2	12
	치 수 사 업	275	284	223	60	22	0	38
	경북도립대학운영	85	85	84	1	0	0	1
	광역교통시설	18	10	0	10	0	0	1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2	517	278	239	2	0	0
	학교용지부담금	10	12	10	2	0	0	2

2) 세입결산

가. 총 괄

-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6조 1,550억 57백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조 1,154억 95백만원 보다 395억 62백만원이 증가(0.6%)하였으며,
- 그 중 일반회계가 5조 2,883억 97백만원(85.9%)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8,666억 60백만원(14.1%)임.
- 2011년도 미수납액은 560억 16백만원으로서, 82억 86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77억 3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률(%) (C/B)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합 계	6,115,495	6,211,073	6,155,057	56,016	8,286	47,730	99.1
일 반 회 계	5,293,164	5,343,329	5,288,397	54,932	8,286	46,646	99.0
특 별 회 계	822,332	867,744	866,660	1,084	0	1,084	99.9
공 기 업	333,400	376,311	376,311	0	0	0	100.0
기 타	488,932	491,433	490,349	1,084	0	1,084	99.8

※ 예 산 현 액 =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6,115,495백만원 6,021,808백만원 93,688백만원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2,883억 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2,931억 64백만원 보다 47억 67백만원 ($\Delta 0.1\%$)이 감소하였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1조 1,635억 55백만원, 세외수입 3,378억 46백만원, 지방교부세 9,618억 4백만원, 국고보조금 2조 7,565억 92백만원, 국내차입금 686억원임.
- 미수납액은 549억 32백만원으로, 82억 86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66억 4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C/A	C/B
합 계	5,293,164	5,343,329	5,288,397	54,932	8,286	46,646	99.9	99.0
지 방 세	1,130,000	1,214,918	1,163,555	51,362	7,182	44,180	103.0	95.8
세 외 수 입	317,424	341,416	337,846	3,570	1,104	2,466	106.4	99.0
지방교부세	961,804	961,804	961,804	0	0	0	100.0	100.0
국고보조금	2,770,336	2,756,592	2,756,592	0	0	0	99.5	100.0
국내차입금	113,600	68,600	68,600	0	0	0	60.4	100.0

※ 예 산 현 액 =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5,293,164백만원 5,200,818백만원 92,346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666억 60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8,223억 32백만원보다 443억 28백만원이 증가
(5.4%) 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763억 11백만원, 의료
급여기금운영 3,995억 74백만원, 치수사업 283억 62
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5억 36백만원, 광역교통
시설 10억 49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6억
62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11억 65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10억 84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산 처 분	다음연도 이월	C/A	C/B
합 계		822,332	867,744	866,660	1,084	0	1,084	105.4	99.9
지역개발기금		333,400	376,311	376,311	0	0	0	112.9	100.0
의료급여기금		398,899	399,574	399,574	0	0	0	100.2	100.0
치 수 사 업		27,503	28,362	28,362	0	0	0	103.1	100.0
경북도립대학운영		8,519	8,536	8,536	0	0	0	100.2	100.0
광역교통시설		1,793	2,133	1,049	1,084	0	1,084	58.6	49.2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51,247	51,662	51,662	0	0	0	100.8	100.0
학교용지부담금		971	1,165	1,165	0	0	0	120.0	100.0

※ 예 산 현 액 =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822,332백만원 820,990백만원 1,342백만원

3) 세출결산

가. 총괄

- 2011년도 세출결산액은 5조 7,617억 1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조 1,154억 95백만원 대비 94.2%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조 358억 2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258억 93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3,537억 77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1,672억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865억 73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B/A)
합계	6,021,808	6,115,495	5,761,718	167,204	186,573	94.2
일반회계	5,200,818	5,293,164	5,035,825	164,209	92,530	95.1
특별회계	820,990	822,332	725,893	2,396	94,043	88.3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조 358억 2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2,931억 64백만원 대비 95.1%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7,669억 2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787억 14백만원, 교육 27억 81백만원, 문화 및 관광 3,368억 96백만원, 환경보호 5,107억 8백만원, 사회복지 1조 1,833억 89백만원, 보건 717억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9,141억 1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341억 18백만원, 수송 및 교통 2,966억 6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66억 10백만원, 과학기술 187억 14백만원, 기타 3,044억 78백만원임.

- 집행잔액 2,573억 39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1,648억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25억 30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5,200,818	5,293,164	5,035,825	164,809	92,530	95.1
일반공공행정	780,123	790,394	766,928	8,005	15,461	97.0
공공질서 및 안전	283,686	297,149	278,714	17,579	856	93.8
교 육	2,785	2,785	2,781	0	4	99.9
문화 및 관광	337,931	338,603	336,896	426	1,281	99.5
환 경 보 호	518,136	523,073	510,708	138	12,226	97.6
사 회 복 지	1,185,407	1,185,916	1,183,389	803	1,724	99.8
보 건	70,770	71,992	71,707	0	285	99.6
농림해양수산	956,375	972,350	914,113	48,051	10,185	94.0
산업중소기업	135,062	135,062	134,118	0	944	99.3
수송 및 교통	312,989	362,137	296,668	65,376	92	81.9
국토 및 지역개발	231,079	246,185	216,610	24,431	5	88.0
과 학 기 술	18,061	19,061	18,714	0	347	98.2
예 비 비	60,353	40,396	0	0	40,396	0.0
기 타	308,062	308,062	304,478	0	3,584	98.8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258억 9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8,223억 32백만원 대비 88.3%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682억 7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981억 21백만원, 치수사업 223억 21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4억 14백만원, 광역교통시설 7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277억 88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억 70백만원임.
- **집행잔액** 964억 39백만원 중 23억 9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40억 43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820,990	822,332	725,893	2,396	94,043	88.3
지 역 개 발 기 금	333,400	333,400	268,272	0	65,128	80.5
의 료 급 여 기 금	398,899	398,899	398,121	0	778	99.8
치 수 사 업	26,641	27,503	22,321	2,226	2,957	81.2
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	8,219	8,519	8,414	0	105	98.8
광 역 교 통 시 설	1,793	1,793	7	0	1,786	0.4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067	51,247	27,788	170	22,289	54.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971	971	970	0	1	99.9

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¹¹⁾은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2억원,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1억 20백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7억 64백만원, 외국인 학교 설립 지원 5억원 등 총 40건에 27억 32백만원이며,
- 예산이체¹²⁾는 조직개편과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총 75건에 827억 55백만원임.

라. 계속비 집행

- 2011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¹³⁾

-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603억 53백만원 중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 사업 외 44건 199억 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억 6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5백만원임.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¹⁴⁾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서~

11) 『예산전용 상세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62~865쪽 참조

12)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66~871쪽 참조

13)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14)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79~887쪽 참조

- 화북간 국지도 건설 外 112건에 1,648억 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57건 1,282억 1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6건에 365억 91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없음.

사. 채무부담 행위

-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아. 수입대체경비

- 지방재정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중 세입결산액은 11억 5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 2백만원임.

5. 세입·세출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1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2,586억 79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1,645억 69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762억 2백만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70억 46백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E=A+D)
		계(D=B-C)	조성액(B)	사용액(C)	
계	418,083	81,792	152,569	70,777	499,875
통 합 관 리 기 금	83,822	3,355	8,304	4,949	87,177
중소기업근로자녀장학기금	3,409	19	119	100	3,428
중소기업육성기금	189,025	42,090	77,191	35,101	231,115
문화예술진흥기금	5,791	1,286	2,372	1,086	7,077
체육진흥기금	15,825	55	555	500	15,880
농어촌진흥기금	45,028	31,143	49,615	18,471	76,171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9	5	53	48	1,524
포플라장학기금	266	△2	9	12	263
사회복지기금	11,805	175	411	236	11,980
재해구호기금	17,612	365	613	247	17,977
여성발전기금	3,542	6	126	120	3,548
청소년육성기금	3,391	△3	117	120	3,388
다문화가족지원기금	1,181	1,205	1,205	0	2,386
식품진흥기금	12,501	2,092	4,245	2,153	14,594
재난관리기금	22,021	△147	6,258	6,405	21,87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344	147	1,376	1,229	1,492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11년도말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1조 2,593억 7백만원으로 2010년도말 1조 2,788억 61백만원보다 195억 5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26억 60백만원, 특별회계 9,244억 40백만원, 기금 2,122억 8백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 7백만원, 융자금 채권이 1조 2,592억 1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1,259,307	122,660	924,440	212,208	
보증금채권	107	100	6	0	◦ 일반회계 • 전화 전용회선 예치금 등 100 ◦ 특별회계 • 경북도립대학 6
융자금채권	1,259,201	122,559	924,433	212,208	◦ 일반회계 • 공무원학자대여금 19,475 • 주택융자 103,049 • 기타 33 ◦ 특별회계 • 지역개발 924,433 ◦ 기 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126,142 • 농어촌진흥기금 71,818 • 기타 14,248

나. 채 무

- 우리 道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9,064억 50백만원에서
 - 당해연도에 1,925억 21백만원을 발행하고
1,384억 63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05억 8백만원임.
- 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채권 8,405억원, 차입금 1,200억원임.

◆ 채무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회 계 별				채 무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9,605	1,200	8,405	0	
지 방 채	9,605	1,200	8,405	0	
일반회계 차입금	1,200	1,200	0	0	• 지방공공자금 차입 1,200
공 기 업 특별회계	8,405	0	8,405	0	•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출 8,405
채무부담행위	0	0	0	0	• 지방도건설 0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11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592억 69백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1조 1,909억원 14백만원 보다 3,683억 5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가 2,154필지 1,687억 6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86필지 22억 43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1,665억 26백만원이 순증하였음.
- 건물은 47동 370억 2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17동 20억 65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349억 62백만원이 순증하였음.
- 또한, 입목죽 2억 73백만원, 공작물 1,099억 36백만원, 기계기구 3백만원, 선박 5억 11백만원, 무체재산 9억 87백만원, 유가증권 550억원, 용익물건 1억 56백만원이 순증 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5,774,960	11,909	68,331	3,684	5,843,291	15,593
토 지(필)	81,265	6,658	1,868	1,665	83,133	8,323
건 물(동)	597	1,805	30	350	627	2,155
입목죽(주)	3,745,000	95	65,600	3	3,810,600	98
공작물(점)	3	32	605	1,099	608	1,131
기계기구(점)	1	1	1	0	2	1
선 박(척)	2	21	3	5	5	26
항공기(대)	2	137	0	0	2	137
무체재산	49	1	220	10	269	10
유가증권(주)	1,947,956	3,139	2	550	1,947,958	3,689
용익물권(건)	85	22	2	2	87	23

나. 물 품

- 2011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294억 42백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223억 98백만원 보다 70억 4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일반승용차 30대 4억원, 컴퓨터서버 176대 50억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 전환하여 77억원이 증가하고, 복사기 25대 1억원, 노트북컴퓨터 772대 1억원 등을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6억원이 감소하였음.

◆ 증감사유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158	224	411	70	2,569	294
구매/매각	1,968	211	378	34	2,346	246
관리전환	190	13	24	30	214	42
기 타	0	0	9	6	9	6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11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6조 1,550억 57백만원, 세출 5조 7,617억 18백만원으로 3,933억 39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6,155,057	5,761,718	393,339
일 반 회 계		5,288,397	5,035,825	252,573
공기업 특별회계		376,311	268,272	108,039
지역개발기금운영		376,311	268,272	108,039
기타 특별회계		490,349	457,621	32,728
의료급여기금운영		399,574	398,121	1,453
치 수 사 업		28,362	22,321	6,041
경북도립대학운영		8,536	8,414	122
광역교통시설		1,049	7,165	1,042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662	27,788	23,874
학교용지부담금		1,165	970	195

나. 세입세출외 현금

- 2011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6억 1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14백만원 보다 27억 9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8백만원, 보관금 10억 5백만원, 기타 6억 6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종 류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잔 액
			증 가 액	지 출 액	차 감 액	
합 계		4,414	153,733	156,528	△2,795	1,619
보 증 금		76	51	120	△69	8
보 관 금		801	20,814	20,610	204	1,005
기 타		3,537	132,868	135,798	△2,930	606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6조 1,154억 9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6,451억 40백만원 보다 4,703억 55백만원(8.3%)이 증가하였으며,
- 2007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9.2%임.

◆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 장 륜(%)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43,032	48,739	55,678	56,451	61,155	9.2	8.3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6조 1,550억 57백만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5조 7,617억 18백만원으로,
- 차입잔액은 3,933억 3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833억 87백만원, 사고이월 388억 17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1,222억 4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1억 5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649억 78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9.8%, 세출부문은 7.8%씩 증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세입부문이 6.4%, 세출부문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8.0%, 세출부문 7.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2.6%, 세출부문이 6.6%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 세출이 다른 부문보다 감소율이 높은 이유는 공기업(지역개발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출부문이 전년도 대비 15.8%나 감소한 것 때문임.
-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9%, 국고보조금은 6.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사업수가 일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며,
- 앞으로,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SOC 사업의 국비 의존도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道의 경우 중앙부처에 의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체납세 징수 대책 등 세입 결손을 막으려는 노력과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재정 편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함.

◆ 세입 · 세출 5년간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장률(%)	
							연평균	전년대비
세입	합 계	4,472,017	4,964,626	5,705,261	5,784,278	6,155,057	9.8	6.4
	일반회계	3,711,722	4,201,944	4,866,288	4,894,459	5,288,397	-	8.0
	특별회계	760,295	762,682	838,973	889,819	866,660	-	△2.6
	공기업	273,637	257,101	355,529	393,280	376,311	-	△4.3
	기 타	486,658	505,581	483,444	496,539	490,349	-	△1.2
세출	합 계	4,105,826	4,592,533	5,372,353	5,465,664	5,761,718	7.8	5.4
	일반회계	3,383,907	3,888,972	4,668,138	4,688,533	5,035,825	-	7.4
	특별회계	721,919	703,561	704,215	777,132	725,893	-	△6.6
	공기업	260,056	229,776	251,522	318,580	268,272	-	△15.8
	기 타	461,863	473,785	452,693	458,552	457,621	-	△0.2
차입잔액(A-B)		366,191 (8.2%)	372,093 (7.5%)	332,907 (5.8%)	318,614 (5.5%)	393,339 (6.4%)	-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전년 대비 증감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예산현액	%	결 산 액	%
계	48,082	52,932	48,945	52,884	4,900	10.2	3,939	8.0
지 방 세	10,030	11,300	10,728	11,636	1,270	12.7	908	8.5
세 외 수 입	3,114	3,174	3,201	3,378	60	1.9	177	5.5
지방교부세	8,837	9,618	8,911	9,618	781	8.8	707	7.9
보 조 금	25,851	27,703	25,855	27,566	1,852	7.2	1,711	6.6
지방채 및 예치금	250	1,136	250	686	886	354.4	436	174.4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조 2,883억 9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 그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조 7,184억원으로 세입예산의 70.3%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2,418억원이(7.0%)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5,01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85억원(7.8%)이 증가하였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총 결손처분액**은 82억 86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 결손처분액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71억 82백만원, 세외수입은 11억 4백만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140억 40백만원에 비해 68억 58백만원이 감소한 71억 82백만원을 정리하여 48.8% 감소하였으며, 체납율은 2006년~200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세 결손처분액 71억 82백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39억원, 행방불명 5억원, 시효완성 8억원, 배
분금액부족 14억원, 기타 5억원 등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가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채납률(%) (C/A)
			계(C)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06년	869,517	811,081	58,436	6,828	51,608	6.7
2007년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7.0
2008년	859,046	788,327	70,720	12,396	58,324	8.2
2009년	867,509	798,850	68,659	12,668	55,992	7.9
2010년	1,134,595	1,072,795	61,800	14,040	47,760	5.4
2011년	1,214,918	1,163,555	51,362	7,182	44,180	4.2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기 타
지방세	7,182 (100.0%)	3,899 (54.3%)	539 (7.5%)	832 (11.6%)	1,383 (19.3%)	529 (7.4%)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상북도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7종으로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666억 60백만원임.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 3,763억 11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995억 74백만원, 치수사업 283억 62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5억 36백만원, 광역교통시설 10억 49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516억 62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11억 65백만원임.
- 2007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도는 다소 감소($\Delta 2.6\%$)하였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이 2010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채권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 5년간 148억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급여진료비 등 위탁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11년도에 총 8,674억 4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666억 60백만원을 징수하고 10억 84백만원의 미

수납금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이월금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10억 84백만원인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음.

◆ 연도별 ·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760,295	762,681	838,973	889,819	866,660
지역개발기금	273,637	257,101	355,529	393,280	376,311
의료급여기금	384,736	405,050	385,038	383,146	399,574
치 수 사 업	39,771	33,452	36,848	35,039	28,362
경북도립대학운영	7,118	8,328	8,293	9,122	8,536
광역교통시설	9,380	4,171	2,129	3,437	1,04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5,653	54,579	51,137	65,796	51,662
학교용지부담금	0	0	0	0	1,165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조 358억 2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2,931억 64백만원의 95.1%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결산내역¹⁵⁾중 특이사항을 보면

- 전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부문별 1조원을 넘는 지출을 보인 사회복지 부문이 1조 1,833억 89백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141억 13백만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경비인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7,669억 28백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이 27억 81백만원으로 0.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부문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 위	부 문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비 율
	총 계	5,293,164	5,035,825	
1	사 회 복 지	1,185,916	1,183,389	23.5
2	농 립 해 양 수 산	972,350	914,113	18.2
3	일 반 공 공 행 정	790,394	766,928	15.2
4	환 경 보 호	523,073	510,708	10.1
5	수 송 및 교 통	362,137	296,668	5.9

※ 총 14개 부문별 결산내역 중 상위 5개 부문만 작성

15) 심사보고서 『부문별 세출 결산 내역』 참조

(2) 예비비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603억 53백만원 중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사관리 사업 外 44건에 199억 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억 6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5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주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정비 관련 비용과 호우 및 대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용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57건 1,282억 17백만원, 사고이월 56건 365억 91백만원으로 총 113건에 1,648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4억 63백만원(78.5%)이 증가하였음.
-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영천 경마공원 허가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비 이월과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금액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 때문으로 판단됨.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평균	전년 대비
88	75,183	134	137,141	82	65,246	123	92,346	113	164,809	29.0%	78.5%

(4) 집행잔액(불용액) 현황¹⁶⁾

- 2011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현액 5조 2,931억 64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14억 4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4억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9억 42백만원, 예산절감이 13억 22백만원,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146억 3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 4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2011년	51,449	29,942	1,322	14,638	5,548	
2010년	20,048	2,383	466	12,508	4,692	

(5)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¹⁷⁾

-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도비 포함) 2조 3,307억 41백만원 중 2조 2,716억

1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현황(1억원 이상)』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1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32백만원(97.5%)을 집행하고, 512억 8백만원(2.2%)을 이월하였으며, 79억 1백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이 97.5%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새마을봉사과 소관 새마을운동육성지원(75억원)은 전액을 이월시켰으며, 문화재과 소관 세계유산보존 추진(99백만원), 치수방재과 소관 고향의 강사업(26억원)은 70% 이상을 이월시켰음.

(6) 예산전용 현황¹⁸⁾

- 2011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40건에 27억 32백만원으로 전년도 9건 12억 90백만원 대비 111.8%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나 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통계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증 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증감률
일반회계	9	1,290	40	2,732	1,442	111.8%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258억 93백만원

18) 『예산전용 현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62~865쪽 참조

으로 예산현액 8,223억 32백만원의 88.3%를 지출하였으며,

-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업비,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1%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237억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3%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2.4%)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에 『월성~송곡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를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2012년 2월 공사착수 및 사업비 조기 집행함),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우리 道 대응사업비로 투자 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 현황(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예산현액(A)	순세계잉여금(B)	비율(B/A)
	의료급여기금운영	398,899	1,236	0.3%
	치 수 사 업	27,503	3,816	13.9%
	경북도립대학운영	8,519	122	1.4%
	광 역 교 통 시 설	1,793	1,042	58.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247	23,704	46.3%
	학교용지부담금	971	195	20.1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 : 2.4%

⇒ 예산현액 5,293,16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6,824백만원

4. 결산검사 의견

- 경상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채옥주 外 위원 8명)은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2. 5. 15 ~ 5. 27)하여 총 1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¹⁹⁾을 지적하였음.
-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예산전용 및 과목변경 과다 사용 집행』은 예산 편성시 사업과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용 또는 변경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대책 소홀』에 대해서도 교육

19) 개선 및 권고사항 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참조

청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은

- 서민이 대접 받는 따뜻한 경북구현, 신성장 동력이 될 과학기술산업 육성,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개선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보 조 자 료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 228
2.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230
3.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 233
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233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신도시조성과	도청 및 도의회신청사건립 (시설비)	24,950,000	2,659,291	22,290,709	0	
"	도청 및 도의회신청사건립 (시설부대비)	50,000	0	50,000	0	
일자리창출단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102,950	1,027,700	0	75,250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8,058,105	7,988,105	0	70,000	
"	공립치매병원건립 및 장비 구입	1,500,000	950,000	550,000	0	
여성청소년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보조)	587,856	323,256	0	264,60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육성지원 (시설비)	7,225,000	0	7,225,000	0	
"	새마을운동육성지원 (감리비)	261,000	0	261,000	0	
물산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6,616,000	16,416,000	0	200,000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민자)	3,522,000	3,457,000	0	65,000	
"	하수처리장 확충	84,931,000	84,621,000	0	310,000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37,186,021	37,052,268	0	133,753	
"	산림경영지도	1,489,600	1,426,320	0	63,280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6,680	410,815	0	95,865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자치단체자본보조)	7,026,814	6,909,600	0	117,214	
"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275,730	223,454	0	52,277	
산림비즈니스과	산림휴양등산증진 (시설비)	880,000	439,105	304,885	136,010	
"	산림휴양등산증진 (자치단체자본보조)	3,787,543	3,706,063	0	81,480	
산림환경연구원	사방사업(시설비)	20,733,697	16,271,807	4,302,510	159,380	
"	사방사업(감리비)	741,535	388,129	334,951	18,455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사방사업	14,327,865	14,152,782	0	175,083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친환경농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지원)	89,249,380	88,979,294	0	270,086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8,368,400	28,152,324	0	216,076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924,369	752,918	0	171,451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2,219,754	22,142,502	0	77,252	
식품유통과	과실브랜드육성지원	196,000	135,324	0	60,676	
축산경영과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5,676,368	5,561,238	0	115,130	
"	공동방재단지원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2,116,420	1,951,890	0	164,530	
"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가축방역)	5,495,568	4,750,652	0	744,916	
"	구제역 긴급가축방역	12,310,000	11,472,996	0	837,004	
"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506,610	281,216	0	225,395	
"	축산분뇨처리시설	11,473,634	10,951,997	0	521,637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1,224,750	9,993,286	0	1,231,464	
문화재과	세계유산보존추진	100,000	0	99,000	1,000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시설비)	36,240,000	23,116,687	13,123,313	0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시설부대비)	184,000	112,451	71,549	0	
"	고향의강사업	3,416,000	864,100	2,551,900	0	
신도시조성과	도청 및 도의회신청사건립	2,000,000	455,547	1,544,453	0	
산림환경연구원	사방사업	3,841,700	1,299,210	2,542,490	0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	6,198,811	4,481,315	1,717,496	0	

※ 이월액 또는 집행잔액이 5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음.

2.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 : 60,352,765천원
- 지출결정 : 19,957,114천원
- 집행행 : 19,162,393천원
- 잔액 : 794,721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액	집행사유	해당결과
계	19,162,393		
구제역매몰지 사후정비 및 현지조사반운영	140,005	구제역매몰지 사후정비 및 현지조사 운영경비	환경특별관리단
"	13,550	"	"
"	97,500	"	"
"	4,826	"	"
도정현황관리 및 정책홍보	59,976	경북 브랜드관 설치 운영비	정책기획관
지역공동체일자리	508,725	구제역피해지역 사후관리 인력운영경비	일자리창출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추진	785,36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홍보	과학기술과
7월호우피해복구(국고추가)	723,763	7. 7~16호우피해복구비(소규모시설)	새마을봉사과
일시차입금이자상환	4,338,411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세정과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산관리	236,187	부당이득반환금 소송 패소 부담분(국유지 매각)	회계계약심사과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지원사업	4,654,450	구제역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물산업과
먹는샘물공급	12,540	해평 광역상수도 취수 중단에 따른 먹는 샘물 긴급 공급	"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집행액	집 행 사 유	해당실과
2월대설피해복구	233,729	2. 11~14 대설피해 복구 지원(공공시설)	산림녹지과
폭설피해복구지원	9,750	덥은감 냉해 피해복구 지원	산림녹지과
산림시설재해복구	286,382	7. 7~16 호우피해복구비	산림환경연구원
구제역방역추진	112,294	구제역 확산방지 광역기동대운영 지원	농업정책과
"	103,355	구제역매몰지 사후정비 및 현지조사 운영경비(광역기동대)	"
"	65,360	구제역 확산방지 광역기동대운영 지원	"
"	47,797	구제역매몰지 사후정비 및 현지조사 운영경비(광역기동대)	"
강풍낙과피해복구지원	7,680	강풍 낙과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2월대설피해복구	62,943	2. 11~14일 대설피해 복구(공공시설)	"
꽃매미방제사업	50,184	전국일제꽃매미방제사업	"
과수저온및우박피해복구지원	1,583,610	과수저온 및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
발농업소득보전지원	80,000	경상북도 농어인 소득안전을 위한 소득보전지원조례 검토 연구용역비	"
6월호우피해복구지원	30,600	6.22~26 호우복구에 따른 피해농가재해복구비 지원	"
과수저온및우박피해재해특별영농비지원	638,982	과수저온 및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국비비지원농가 재해특별영농비	"
갈색무늬피해사과가공용수매비지원	588,760	사과갈색무늬병피해 저품위사과 가공용수매비 지원	"
재해수리시설복구(국고추가)	158,045	7. 7~16 호우피해복구비	농촌개발과
구제역긴급방역	126,980	구제역 출입통제라인 및 상황실근무복 피복비 구입	축산경영과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집행액	집 행 사 유	해당실과
공공체육시설재해복구	17,930	2. 11~14 대설피해복구지원(공공시설)	체육진흥과
7월호우피해복구(국고추가)	136,394	7. 7~16 호우피해복구비	도로철도과
지리정보시스템운영	150,000	구제역 매몰지 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지적과
1월대설피해복구비	170,000	'11. 1. 3~1. 4 대설피해복구비 도비부담분	치수방재과
"	169,720	'11. 1. 3~1. 4 대설피해복구 도비부담분	"
2월 대설피해 복구	215,000	대설피해('11. 2. 11~14) 복구비 지원	치수방재과
"	361,590	2. 11~14 대설피해복구지원	"
"	50,000	2. 11~14 대설피해복구지원(기타공공)	"
7월 호우 응급복구	100,000	7. 9~7. 1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62,075	7. 7~16 호우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
"	900,957	7. 7~16 호우피해복구비(소하천)	"
"	456,304	7. 7~16 호우피해복구비(하천)	"
지방도유지관리	63,264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종합건설사업소
7월호우피해 복구비(국고추가)	273,411	7. 7~16 호우피해복구비	"
교통안전시설설치	68,000	민사소송 배상 판결에 따른 구상금	종합건설사업소 소북부지소
"	106,000	"	"

3.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61,844,729	92,530,161	28,914,750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0,199,009	29,941,774	257,235
예산절감	1,388,136	1,321,513	66,623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39,515,155	14,637,603	24,877,552
보조금집행잔액	5,764,959	5,548,080	216,879
예 비 비	44,577,652	41,081,191	3,496,461

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금 액	사	유
계			29,276,171		
신도시조성과	신도시진입로개설	시설비	3,990,000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어 국비를 교부 받기 위해 '11년 정리추경시 계상하였으나, 기재부의 사업규모 미확정으로 국비를 미교부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됨	
일자리창출단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8,642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해 2차에 걸쳐 사업비를 교부한 후, 긴급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도비 보유분으로 확보	
세정과	지방교육세전출금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11,900,000	예산대비 실제 징수액 부족 【46억원】 결산 후 정산지급분(12월 지방교육세) 【73억원】	
물산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83,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단위 : 천원)

해당실과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금 액	사	유
물산업과	구제역매몰지관리 관측정설치등	"	434,400	매몰지 760개소 전 지역에 대한 설치사업(도비 6억원)을 확보하 였으나, 관리지침 개정으로 138 개소만 설치하여 잔액 발생	
"	하수처리장확충	"	1,944,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	하수처리장확충 (민자)	"	266,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	하수관거정비사업	"	4,530,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	2,336,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민자)	"	709,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1,254,000	'11년 정리추경 후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됨	
해양개발과	포스텍해양대학원 기자재구입비지원	민간자본 보조	300,000	포스텍해양대학원 설립 중단에 따른 예산 미집행	
문화예술과	기타단체 예술활동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토지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관광마케팅 사업단	문화관광 축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00	국비보조금이 도를 거쳐 시군에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문광부에서 타시도 명예대표축제와 형평성 문제로 안동탈춤축제조직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른 예산서상 불 용액	
균형개발과	동해안권발전 종합대책	시설비	811,129	- 동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수립 용역" 예산편성 하였으나, -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사업의 효과 및 민자유치에 필요한 개발 면적을 확대하여 "기본구상용역" 으로 변경 (개발면적 50만㎡→500만㎡)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금 액	사 유
계			225,480	
균형개발과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국고귀속 분납입	기타부담금	225,480	- 2011년도 부담금 징수분에 대한 국고귀속분 (40%)을 추계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 건축경기 불황으로 부과사유 미발생, 사업취소 및 납기 미도래에 따른 국고귀속부담금 집행 사유 미발생

※ 세부사업별(통계목) 1억원 이상만 작성함.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6. 26(화)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상북도의회

목 차

I. 소관부서	239
II. 심사경과	239
III. 제안이유	239
IV.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239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239
2.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	249
V. 전문위원 검토의견	252
1. 총괄부문	252
2. 세입부문	252
3. 세출부문	254
VI. 질의 및 답변요지	264
VII. 토론요지	265
VIII. 심사결과	265
IX. 소수의견의 요지	265
X. 기타 필요한 사항	265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I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5. 31, 경상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2. 6. 18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0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이유

-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776억 9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3조 5,097억 9천 4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3조 843억 9천만원으로
- 결산차액(잉여금)은 4,254억 4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3,496,267	3,509,794	3,084,390	425,404	○ 순세계잉여금 : 250,350 ○ 이 월 금 : 175,054 • 명 시 이 월 : 85,790 • 사 고 이 월 : 89,264 ○ 계 속 비 이 월 : 0 ○ 국고보조금잔액 : 0 ○ 지방교육채상환 : 0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254억 4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750억 5천 4백만원을 제외하고 2,503억 5천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10년도 순잉여금 1,463억 2천 3백만원 대비 1,040억 2천 7백만원(71.1%)이 증가한 것임.

◆ 2011 잉여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 계 잉여금 (C=A-B)	이월액 (D)	계속비 이 월 (E)	국 고 보조금 잔 액 (F)	지 방 교육채 상 환 (G)	순잉여금 (C-D-E -F-G)	2010년도 순잉여금
계	3,509,794	3,084,390	425,404	175,054	0	0	0	250,350	146,323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세입 결정액은 3조 5,100억 6천만원이며, 이 중 3조 5,097억 9천 4백만원은 수납되었고, 6백만원은 불납 결손되었으며, 2억 5천 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불납 결손액 6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4백만원
- 잡수입(과년도수입) 2백만원

불납결손액은 시효완성 및 학생의 자퇴·퇴학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2억 5천 9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 2백만원
- 자산수입 4천만원
- 잡수입 등 2억 1천 7백만원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지난연도수업료), 자산수입,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수납률 ③/②
합 계	3,496,267	3,510,060	3,509,794	6	259	99.9
이전수입	3,016,713	3,025,230	3,025,230	-	-	100.0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2,716,945	2,728,865	2,728,865	-	-	100.0
지방자치단체 이 전 수 입	291,558	289,256	289,256	-	-	100.0
기타이전수입	8,210	7,109	7,109	-	-	100.0
자체수입	55,538	60,814	60,548	6	259	99.6
교수·학습 활 동 수 입	29,608	31,089	31,082	4	2	99.9
행정활동수입	605	542	542	-	-	100.0
자 산 수 입	10,415	12,160	12,120	-	40	99.7
이 자 수 입	13,165	14,580	14,580	-	-	100.0
금융자산회수	1	1	1	-	-	100.0
잡 수 입	1,744	2,442	2,224	2	217	91.1
기 타	424,016	424,016	424,016	-	-	100.0
전년도이월금	424,016	424,016	424,016	-	-	100.0

□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수납액 기준)

이전수입은 3조 252억 3천만원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86.2%임.

-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7,288억 6천 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92억 5천 6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71억 9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605억 4천 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7%이며

- 교수 - 학습활동수입 310억 8천 2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5억 4천 2백만원
- 자 산 수 입 121억 2천만원
- 이 자 수 입 145억 8천만원
- 금융자산회수 1백만원
- 잡 수 입 22억 2천 4백만원임.

이월금은 4,240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2.1%임.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예산액 3조 2,185억 7천 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776억 9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3조 843억 9천만원은 지출(88.2%)하였고, 1,750억 5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5.0%)하였으며, 2,368억 2천 2백만원은 불용(6.8%)처리하였음.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3,218,574	277,693	3,496,267	3,084,390	175,054	236,822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예산액 ①	예 산 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 ④-⑤	불용률 ⑥/③
합 계	3,218,574	277,693	3,496,267	3,084,390	175,054	236,822	6.8
유아 및 초중등교육	2,945,448	226,744	3,172,192	2,963,040	103,597	105,555	3.3
인적자원운용	1,529,179	44	1,529,222	1,506,456	-	22,766	1.5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339,740	3,726	343,466	323,320	4,360	15,786	4.6
교육격차해소	121,891	716	122,607	118,590	-	4,018	3.3
보 건/급 식/ 체 육 활 동	29,583	3,727	33,310	30,603	1,783	925	8.1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730,677	27,207	757,883	715,017	26,544	16,322	2.2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194,379	191,324	385,703	269,054	70,910	45,739	11.9
평생·직업교육	13,500	36	13,536	12,785	-	751	5.5
평 생 교 육	7,577	36	7,613	7,049	-	564	7.4
직 업 교 육	5,922	-	5,922	5,735	-	187	3.1
교육일반	259,626	50,913	310,540	108,566	71,457	130,516	42.0
교육행정일반	29,289	1,290	30,578	24,784	2,085	3,710	12.1
기관운영관리	79,685	50,693	130,378	50,009	69,373	10,996	8.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521	-	34,521	33,773	-	748	2.2
예비비및기타	116,131	△1,070	115,062	-	-	115,062	100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427억 3천 7백만원
- 예산 절감 6억 3천 2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1,295억 2천 5백만원
- 집행잔액 639억 2천 9백만원임.

◆ 불용액 내역(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내역				비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 계	3,496,267	236,822	42,737	632	129,525	63,929	
인적자원운용	1,529,222	22,766	526	26	2,449	19,764	
교수-학습 활동지원	343,466	15,786	5,204	38	2,885	7,659	
교육격차해소	122,607	4,018	102	-	10	3,905	
보건/급식 /체육활동	33,310	925	92	4	180	649	
학교재정 지원관리	757,883	16,322	148	-	1,238	14,93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85,703	45,739	32,545	-	2,417	10,777	
평생교육	7,613	564	69	-	53	442	
직업교육	5,922	187	80	-	-	107	
교육행정일반	30,578	3,710	631	466	503	2,110	
기관운영관리	130,378	10,996	3,340	97	4,728	2,83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521	748	-	-	-	748	
예비비및기타	115,062	115,062	-	-	115,062	-	

라. 예비비

- 2011회계연도 예비비는 2011년 초·중등 임용시험 시행 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예방 경비, 폭설 및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물 복구비, 주5일 수업 전면 시행대비 시범운영 경비 등에 따른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10억 7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천 7백만원(97.8%)임.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합 계	1,070	1,047	-	22	
교원임용시험관리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6	5	-	1	• 2011년 초·중등교원 신규 임용시험시행 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예방경비지원
교육시설재난대비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	256	255	-	1	• 울진·영덕지역 폭설피해에 따른 교육시설물 복구지원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56	42	-	14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음용교 안전한 식수 공급 경비 지원
교육시설재난대비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89	89	-	-	• 남성현초등학교화재복구비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81	80	-	1	• 이두초등학교 옹벽붕괴 위 험에 따른 기존 옹벽철거 및 재설치비 지원
다목적교실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61	61	-	-	• 경주공업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을 위한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 용역비
교육과정연구지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484	484	-	-	•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시범운영 경비지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 (행정지원국 총무과)	38	32	-	6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경비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2011년 9월 1일 시설거점 운영변경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3건 4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예산이체 세부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유 별	건 수	이체 감		이체 증	
		부 서	금 액	부 서	금 액
합 계	3		49		49
시설거점운영변경 (2011.9.1)	1	영덕교육지원청	18	울진교육지원청	18
	1	울진교육지원청	25	교육시설과	25
	1	영덕교육지원청	6	교육시설과	6

사. 예산전용

- 예산전용은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 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 9건 77억 8천 5백만원임.

◆ 예산전용 세부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전 용 액	
	증	감
합 계(9건)	7,785	7,785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사업 분담금	153	153
경희학교, 울릉고 급식학교 현대화사업	406	406
2011년 8월말 교원명예퇴직 수당 부족액	1,837	1,837
New-Start프로그램 운영	363	36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IBT) 구축 중앙센터 설치 분담금	700	1,820
2011년 교과교실제 신규지정학교 시설비	3,991	39
북삼고 급식시설 증축비	95	95
행정기관운영비 지원사업 감소로 단위학교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확대	212	212
공립학교 지원사업비 지원확대	27	27

아. 계 속 비 :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월 비

- 이월액은 예산현액 3조 4,962억 6천 7백만원 중 1,750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90건에 857억 9천만원(49.0%)
 사고이월 233건에 892억 6천 4백만원(51.0%)임.

◆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3,496,267	175,054	-	85,790	89,264	5.0

2.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1,023억 2천 3백만원보다 30억 1백만원이 증가된 1,053억 2천 4백만원으로서
- 대여장학금 29억 8천 7백만원, 재산수입(임대료) 3천 4백만원, 잡수입 3천 2백만원, 소송비용액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1백만원, 임차보증금 4천 7백만원, 수업료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증	감		
계	102,323	3,001	2,987	48	105,324	
원어민교사전세자금	81	△1	-	1	80	
사무실임대료	120	-	-	-	120	
임차보증금	2,885	△47	-	47	2,838	
대여장학금	99,040	2,987	2,987	-	102,027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증	감		
재산수입(임대료)	72	34	34	-	107	
수 업 료	10	△7	-	7	3	
잡 수 입	116	32	32	-	148	
소송비용액	-	3	3		3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 6,369억 5천 2백만원보다 1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6,381억 2천 6백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 지 급 이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합 계	636,952	1,174	27,366	26,191	638,126	-	
차입금	156,327	-	-	-	156,327	-	
BTL	480,625	1,174	27,366	26,191	481,800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3,448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4조 7,074억 6천 6백만원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3,309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된 4조 6,268억 6천 8백만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38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된 805억 9천 8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4,362,640	344,826	395,953	51,127	4,707,466
행정재산	4,295,936	330,932	368,845	37,913	4,626,868
일반재산	66,703	13,895	27,108	13,214	80,598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49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된 2,810억 9천 6백만원으로 전기·통신기기 등 10종, 53,025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 : 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계	증	감	
전기·통신 기기 등	수량	51,341	1,684	5,106	3,422	53,025
	금액	266,175	14,921	37,449	22,527	281,096

V.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776억 9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은 3조 5,100억 6천만원을 세입결정하여 3조 5,097억 9천 4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억 6천 5백만원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의 88.2%인 3조 843억 9천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4,254억 4백만원
으로 이월금 1,750억 5천 4백만원, 순잉여금 2,503억 5천만원임.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과 행정활동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100% 수납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97.6% 수납되어 전체 수납률은 99.9%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정수율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1년	3,496,267	3,510,060	3,509,794	99.9	6	259
2010년	3,286,659	3,306,889	3,306,683	99.9	9	197
2009년	3,044,202	3,062,621	3,062,367	99.9	32	223
2008년	2,873,724	2,920,619	2,920,389	99.9	10	220

- 도교육청의 수납액은 예산현액 3조 4,962억 6천 7백만 원에 비하여 135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3조 5,097억 9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 증가하였음.
-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무보고서¹⁾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1.24% 보다 낮아진 1.1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속성상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되어있고, 수업료 등 자체재원이 경미하기 때문으로 향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재무보고서 9page.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3조 4,962억 6천 7백만원의 88.2%인 3조 843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118억 7천 6백만원으로 내역은 2012년도 이월액 1,750억 5천 4백만원(이월률 5.0%), 불용액 2,368억 2천 2백만원임(불용률 6.8%).

◆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11년	3,496,267	3,084,390	88.2	175,054	5.0	236,822	6.8
2010년	3,286,659	2,868,267	87.3	277,693	8.4	140,699	4.3
2009년	3,044,202	2,740,060	90.0	132,502	4.4	171,640	5.6
2008년	2,873,724	2,565,524	89.3	210,962	7.3	97,238	3.4
2007년	2,540,012	2,346,472	92.4	95,825	3.8	97,715	3.8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68억 2천 2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27억 3천 7백만원, 예산절감 6억 3천 2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295억 2천 5백만원, 집행잔액 639억 2천 9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961억 2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금년 불용액은 전년에 비하여 68.3%가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 불용처리 되었으며, 많은 금액의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가 철저했는지, 불용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 잔액
2011	3,496,267	236,822	6.8	42,737		632	129,525	63,929
2010	3,286,659	140,699	4.3	9,850		786	93,351	36,712
2009	3,044,202	171,640	5.6	31,531		2,546	84,260	53,304
2008	2,873,724	97,238	3.4	7,260		1,645	57,754	30,579
2007	2,540,012	97,715	3.8	19,939	4	2,475	43,908	31,389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2011회계연도 예비비는 8건에 10억 7천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실제 지출액은 10억 4천 7백만원이며, 2천 2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예비비 지출사유는 폭설 및 화재에 따른 피해 교육시설 복구비 지원, 용벽붕괴 위험에 따른 용벽 재설치비 지원, 2011년 초·중등 임용시험 시행 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예방 경비,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안전한 물 공급 경비, 주5일 수업 전면 시행대비 시범운영 경비 지원 등이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11년도 이월액은 1,750억 5천 4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5.0%의 규모로 지난해 2,776억 9천 3백만원보다 63% 감소한 규모임.
-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90건에 85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216건 1,355억 5천 5백만원보다 63.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명시이월금액이 많은편임.
-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일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별 지연 사유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경우²⁾ 사업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예산 편성시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사업은 233에 892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311건 1,421억 3천 8백만원에 비하여 62.8%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음.

2) 본예산에 반영되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

구분	소 관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1	체육 건강과	위탁급식 직영 전환교 시설기구비 지원 (경주정보교)	85	85	본예산 반영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변경
2	포항교육 지원청	청사신축(포항교육청)	96	96	본예산, 제2회 추경 반영 친환경인증 및 에너지효 율1등급 협의 진행기간 소요
3	상주교육 지원청	학생용 책걸상 교체 (남산중)	20	20	본예산 반영 학교법인 대웅투자금 미 확보로 계약이행기간 부족
4	상주교육 지원청	교실출입문 교체 (남산중)	57	57	본예산 반영 학교법인 대웅투자금 미 확보로 계약이행기간 부족
5	경산교육 지원청	진입로 포장(진성초)	27	27	본예산 반영 지주와의 부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
6	칠곡교육 지원청	포장공사(매원초)	11	11	본예산 반영 2012년 교사증개축 예산과 동시 집행 예정

-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되 시설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월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 구분	예산 현액	이 월 액			비 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1	3,496,267	175,054	85,790	89,264	5.0
2010	3,286,659	277,693	135,555	142,138	8.4
2009	3,044,202	132,502	56,689	75,813	4.4
2008	2,873,724	210,962	122,477	88,485	7.3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및 과다불용에 대하여

-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살펴보면 경주 계림고등학교 급식소증축사업, 화랑교육원청사대수선 및 오수관로설치 사업비를 전액 불용하는 등 사업비의 50% 이상을 이월 또는 불용한 사업은 28건임.
-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없으며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부처 및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 됨에 따라 사업 공기부족 등이 이월 및 불용액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규모, 예산
배정,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이월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 명시이월액 집행내역³⁾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 관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1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 증축 (계림고)	1,062	90	-	0.0	972	91.5
2	교육시설과	급식소 증축 (계림고)	717	-	-	0.0	717	100
3	교육시설과	화랑교육원청사대수선	352	-	-	0.0	352	100
4	교육시설과	화랑교육원 오수관로설치	80	-	-	0.0	80	100
5	교육시설과	학생야영장시설개선 (청도학생야영장)	15	-	-	0.0	15	100
6	교육시설과	교사신축 (석적고)	14,367	3,284	10,977	76.4	106	0.7
7	교육시설과	학생야영장시설개선 (안동학생야영장)	8,710	1,860	6,761	77.6	89	1.0
8	교육시설과	다목적교실 증축 (경주공고)	500	151	344	68.8	5	1.0
9	체육건강과	급식소 증축 (안동여고)	644	235	405	62.8	4	0.6

3) 표설명 : 이월 또는 불용 50% 이상 사업

구분	소 관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10	포항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 개선 (구룡포여중)	67	-	-	0.0	67	100.0
11	포항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부지매입비	772	70	88	11.4	614	79.5
12	경주교육지원청	특별교실 증축 (아화중)	350	133	217	62.0	-	0.0
13	경주교육지원청	교직원사택 건립 (양북초)	200	10	190	95.5	-	0.0
14	김천교육지원청	교사 신축 (남면초)	13,390	-	-	0.0	13,390	100
15	김천교육지원청	부지매입비 (남면초)	3,145	1,080	-	0.0	2,065	65.6
16	경산교육지원청	특수학교교사 신축	16,720	134	-	-	16,586	99.1
17	경산교육지원청	창문 개채 (경산중앙초)	265	6	253	95.5	6	2.3
18	경산교육지원청	교실조도 개선 (경산중앙초)	33	1	20	60.6	12	36.4
19	경산교육지원청	출입문 개채 (경산중앙초)	15	3	12	80.0	-	0.0
20	경산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 (하양초, 경산중앙초)	338	111	209	61.8	17	5.0
21	영덕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 (남정중)	99	4	95	95.9	-	0.0
22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청사 신축비	4,501	987	3,503	77.8	10	0.2
23	영덕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남정초 외 4개교)	125	18	98	78.4	9	7.2

구분	소 관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4	청도교육지원청	담장 설치 (풍각초)	35	-	-		35	100
25	청도교육지원청	교문 개체 (풍각초)	29	-	-		29	100
26	고령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 (다산초)	61	2	59	96.7	-	0.0
27	철곡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축 (왜관동부초)	1,800	793	910	50.5	97	5.4
28	울진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축 (울진남부초)	1,430	138	1,283	89.7	9	0.6

□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하여

- 도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사업이 매년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나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19건 1,455억 5천 4백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액의 증가는 시급한 사업의 지연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철저한 검토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시 반드시 정리하고 교육계획 변화 및 사업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 사업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15,450	-	-	115,450	
1	감사담당관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50	-	-	50	공익신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
2	행정예산과	예비비 및 기타	115,062	-	-	115,062	지급사유 미발생
3	행정예산과	행정보조원 인건비	115	-	-	115	행정대체인력인건비 지원사 취소에 행정보조원 인건비 지원금 잔액
4	행정예산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협력활동 지원	12	-	-	12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별도부서 신설 및 예산편성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5	교육시설과	오수관로 설치 (화랑교육원)	80	-	-	80	자치단체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취소
6	과학직업 교육과	우수교사해외 진출 연수	28	-	-	28	우수교사해외연수인원 미참여로 인한 사업취소
7	체육건강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우수지도자 연수	42	-	-	42	공무원비상근무발령으로 우수지도자 국내연수 출장여비지급사유 미발생
8	교육연수원	중등기술, 가정조리실습지도력 향상 직무연수 여비	12	-	-	12	연수생 계획변경
9	화랑교육원	장애인 안내 표지판 교체	22	-	-	22	시설개선공사 실시예정에 따라 공사할 경우 점자 블록 손상우려로 사업취소
10	포항 교육지원청	도서관담당장 설치	27	-	-	27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미완공으로 공사시기 변경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11	포항 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 개선 (구룡포여중)	67	-	-	67	2012.3.1일자 통폐합에 따른 사업취소
12	포항 교육지원청	야영장학생 숙소용 스틸하우스신축	30	-	-	30	사업취소
13	포항 교육지원청	도서관 대문 설치	30	-	-	30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미완공으로 공사시기 변경
14	김천 교육지원청	교사 신축 (남면초)	13,390	-	-	13,390	혁신도시 입주 예정일 지연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2012년 예산에 재편성 되어 계획변경 및 취소
15	경산 교육지원청	교사 신축 (경산특수학교)	16,443	-	-	16,443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미집행
16	청도 교육지원청	담장 설치 (풍각초)	35	-	-	35	2010년 명시이월사업비로 인접도로 공사중 문화재 발굴로 공사시행 보류
17	청도 교육지원청	교문 개체 (풍각초)	29	-	-	29	2010년 명시이월사업비로 인접도로 공사중 문화재 발굴로 공사시행 보류
18	울진 교육지원청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지원	13	-	-	13	해당자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19	울릉 교육지원청	학기중 중식 지원	67	-	-	67	2011년부터 울릉관내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저소득학생 중식비 미지원

□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 경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채옥주 외 위원 8명)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⁴⁾을 제출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4) 결산검사 시정·개선 사항

구 분	시정 및 개선 사항	해 당 부 서
1	사고이월비에 대한 선금 정산 미이행	재무정보과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재무정보과
3	정수물품 취득절차 미이행	행정예산과 및 전부서
4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예산과 및 전부서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의 지속적 확대	생활지도과
6	재산매각수입 재투자 방안 개선	재무정보과
7	홈페이지 접근성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한 예산액 확보	재무정보과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 저조로 고용부담금 과다납부	행정예산과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